

제 21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5차 본회의 【2014.9.15(월)】

2013회계연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목 차

<b>I. 안건 현황</b> -----	<b>2</b>
1. 소관부서 회부 결산 -----	2
2. 심사경과 -----	2
<b>II. 결산 규모</b> -----	<b>3</b>
1. 세입결산 -----	3
2. 세출결산 -----	4
<b>III. 전문위원 검토보고</b> -----	<b>5</b>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5
2. 세입결산 -----	7
3. 세출결산 -----	28
<b>IV. 심사결과</b> -----	<b>74</b>
1. 주요 질의 및 심사내용 -----	74
2. 토론요지 -----	75
3. 심사결과 -----	76
4.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78

## 1. 소관부서 회부 결산

가. 소관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나. 회계구분

-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
- 예비비 지출
- 채권 및 채무
- 공유재산 및 물품

##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4. 6. 30

나. 제출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14. 9. 4

라. 상정일자 : 2014. 9. 12

- 제안설명 : 행정국장 박송철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질의 및 토론
- 원안승인

## II 결산 규모

### 1. 세입결산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현액 대비	
						증 감 (C-A)	수납률 (C/A)
<b>합 계</b>	2,728,613	2,700,147	2,698,985	176	986	-29,628	98.9
<b>이전수입</b>	2,526,305	2,490,984	2,490,984	0	0	-35,321	98.6
중양정부이전수입	2,046,688	2,036,815	2,036,815	0	0	-9,873	9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8,583	2,018,710	2,018,710	0	0	-9,873	99.5
국고보조금	18,105	18,105	18,105	0	0	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9,980	444,080	444,080	0	0	-25,900	94.5
법정이전수입	460,780	434,890	434,890	0	0	-25,890	94.4
비법정이전수입	9,200	9,190	9,190	0	0	-10	99.9
기타이전수입	9,637	10,088	10,088	0	0	451	104.7
민간이전수입	9,637	10,088	10,088	0	0	451	104.7
<b>자체수입</b>	101,567	108,496	107,334	176	986	5,767	105.7
교수-학습활동수입	85,419	85,934	85,488	164	282	69	100.1
기본적교육수입	85,339	85,854	85,408	164	282	69	100.1
선택적교육수입	80	80	80	0	0	0	100.0
행정활동수입	805	828	828	0	0	23	102.9
사용료및수수료수입	805	828	828	0	0	23	102.9
자산수입	9,574	11,523	11,522	0	1	1,948	120.3
자산임대수입	398	576	575	0	1	177	144.5
자산매각대	9,176	10,947	10,947	0	0	1,771	119.3
이자수입	3,666	5,435	5,435	0	0	1,769	148.3
금융자산회수	0	637	637	0	0	637	순증
기타수입	2,103	4,139	3,424	12	703	1,321	162.8
제재금수입	428	542	300	0	242	-128	70.1
기타수입	1,620	3,119	3,095	0	24	1,475	191.0
과년도수입	55	478	29	12	437	-26	52.7
<b>지방교육채</b>	15,264	15,189	15,189	0	0	-75	99.5
<b>전년도이월금</b>	85,477	85,477	85,477	0	0	0	100.0
순세계잉여금	18,149	18,149	18,149	0	0	0	100.0
전년도이월금	67,328	67,328	67,328	0	0	0	100.0

## 2.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구성비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합 계	2,728,613	100.0	2,635,705	96.6	51,467	1.9	41,440	1.5
유아및초중등교육	2,630,405	96.4	2,542,083	96.6	51,200	1.9	37,122	1.4
인적자원운용	1,529,842	56.1	1,523,873	99.6	48	0.0	5,921	0.4
교수-학습활동지원	173,199	6.3	168,106	97.1	1,759	1.0	3,333	1.9
교육복지지원	262,102	9.6	256,993	98.1	0	0.0	5109	1.9
보건/급식/체육활동	66,062	2.4	62,316	94.3	1,432	2.2	2314	3.5
학교재정지원관리	416,554	15.3	415,357	99.7	352	0.1	846	0.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82,647	6.7	115,438	63.2	47,609	26.1	19,600	10.7
평생·직업교육	12,971	0.5	12,185	93.9	125	1.0	661	5.1
평생교육	12,921	0.5	12,135	93.9	125	1.0	661	5.1
직업교육	50	0.0	50	100.0	0	0.0	0.1	0.2
교육일반	85,237	3.1	81,438	95.5	142	0.2	3,657	4.3
교육행정일반	16,024	0.6	14,897	93.0	106	0.7	1,022	6.4
기관운영관리	16,301	0.6	14,657	89.9	36	0.2	1,608	9.9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2,907	1.9	51,885	98.1	0	0.0	1022	1.9
예비비및기타	5	0.0	0	0.0	0	0.0	5	100.0

##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 &lt; 세입·세출 결산 개요 &gt;

(단위 : 백만원)

회계 연도	예산현액 (A)	세입결산 (B)	세출결산 (C)	세계잉여금 (D=B-C)	이월금 (E)	국고보조 금잔액 (F)	지방채 상환 (G)	순세계 잉여금 (D-E-F-G)
2010	2,583,615	2,491,580	2,326,559	165,021	215,617	-	-	-50,597
2011	2,712,056	2,612,189	2,578,930	33,259	38,335	29	-	- 5,105
2012	2,613,884	2,607,475	2,517,298	90,177	67,328	-	4,700	18,149
2013	2,728,613	2,698,985	2,635,705	63,279	51,467	0.1	2,400	9,412

\* 금액(단위)은 반올림으로 표시되어 일부 끝자리 합이 불일치 할 수 있음. (이하 같음)

- 2013회계연도 예산현액 2조 7,286억 1,300만원은  
최종예산액 2조 6,612억 8,400만원에 전년도 이월금 673억 2,800만원을  
포함한 것으로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8.9%인 2조 6,989억 8,500만원이고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6.6%인 2조 6,357억 500만원이며
- 세입결산액(실제수납액)과 세출결산액(지출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632억 7,900만원임.
  - 이 중 이월금은 514억 6,700만원, 지방교육채 상환<sup>1)</sup>은 24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1,200만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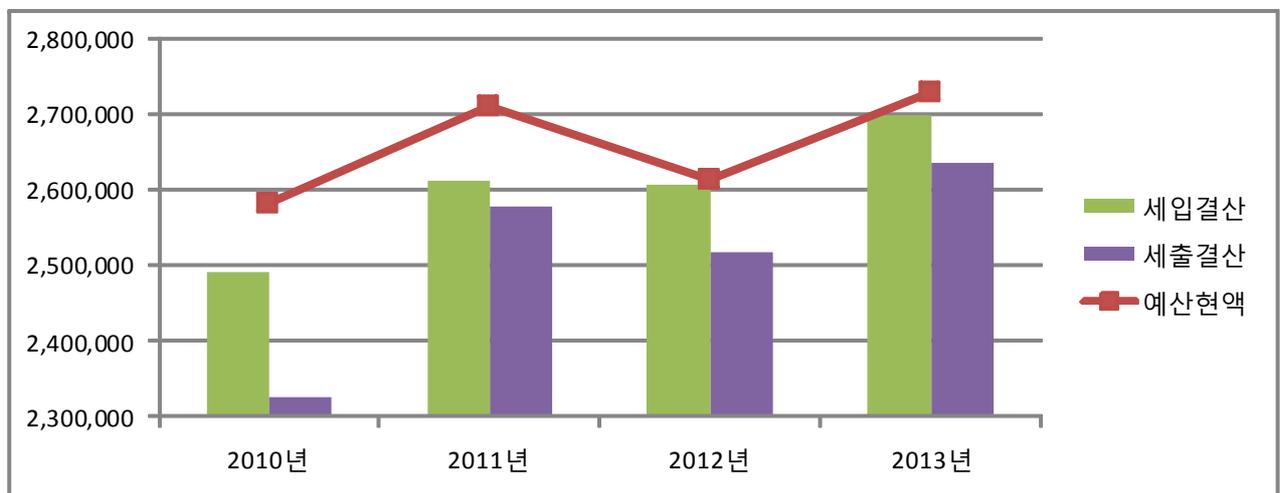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0년부터 연도별 증감 추이를 볼 때,
  - 예산현액은 연평균 1.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2.7%, 세출결산액은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나타내 세입에 비해 세출이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와 그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예·결산 규모가 증대되었으나, 이에 반해 부동산시장 위축 등 실물경기 악화와 이에 따른 지방세 징수 부진,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감소하여 세입결산액이 세출결산액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판단됨.

**< 연도별 세입·세출결산 증감 추이 >**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예산현액 (A)			세입결산 (B)			세출결산 (C)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 대비		금액	전년도 대비	
		증감액	비율		증감액	비율		증감액	비율
2010	2,583,615	38,874	1.5	2,491,580	-85,832	-3.3	2,326,559	108,509	4.9
2011	2,712,056	128,441	5.0	2,612,188	120,608	4.8	2,578,929	252,370	10.8
2012	2,613,884	-98,172	-3.6	2,607,475	-4,713	-0.2	2,517,298	-61,631	-2.4
2013	2,728,613	114,729	4.4	2,698,985	91,510	3.5	2,635,705	118,407	0.05



## 2. 세입 결산

### 1)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현액 대비 수납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	
					증감 (C-A)	수납률 (C/A)	증감 (C-B)	수납률 (C/B)
2,728,613	2,700,147	2,698,985	176	986	-29,628	98.9	-1,162	99.96

○ 2013회계연도 세입 결산 수납액은

- 예산현액 2조 7,286억 1,300만원 대비 98.9%인 2조 6,989억 8,5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0.9%p 감소한 것임.
- 수납액 2조 6,989억 8,500만원은 징수결정액 2조 7,001억 4,700만원 대비 99.96%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며
- 미수납액은 9억 8,600만원으로 전년도 미수납액 8억 6,500만원 보다 14% 증가하였음.

## 2) 과목별 세입결산

### <과목별 세입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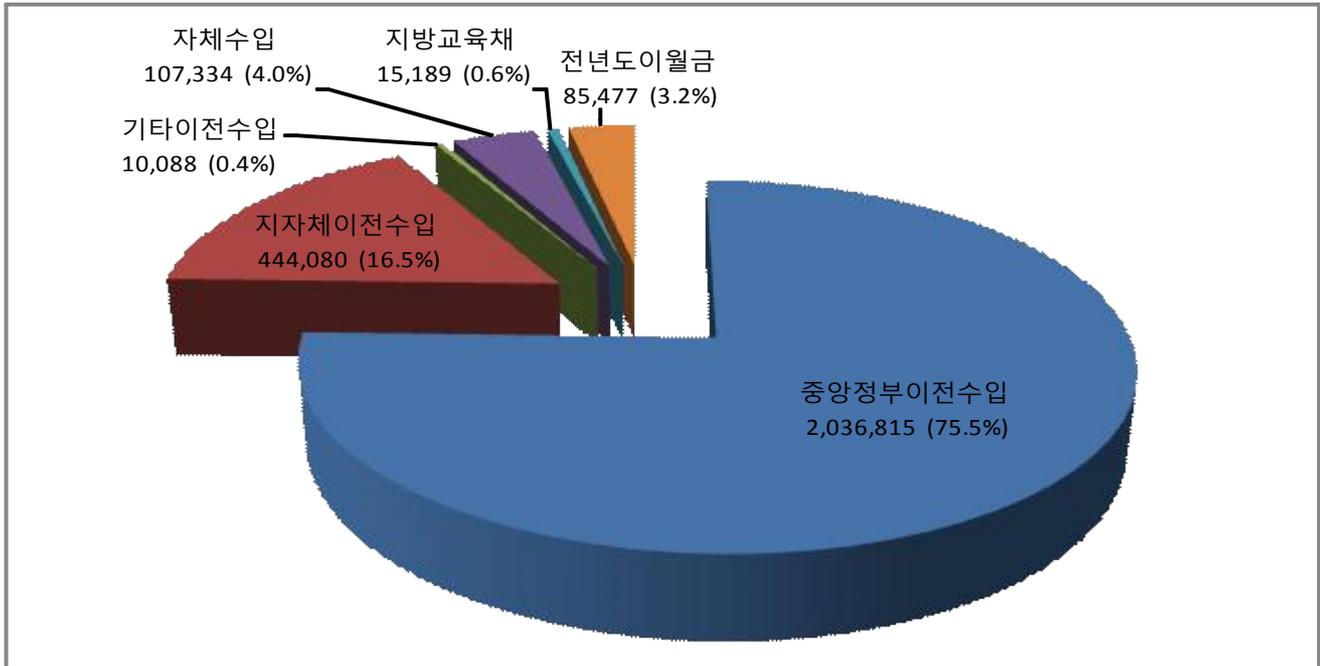
과 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B-C-D)	예산현액 대비	
						증 감 (C-A)	수납률 (C/A)
<b>합 계</b>	2,728,613	2,700,147	2,698,985	176	986	-29,628	98.9
<b>이전수입</b>	2,526,305	2,490,984	2,490,984	0	0	-35,321	98.6
중양정부이전수입	2,046,688	2,036,815	2,036,815	0	0	-9,873	9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8,583	2,018,710	2,018,710	0	0	-9,873	99.5
국고보조금	18,105	18,105	18,105	0	0	0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9,980	444,080	444,080	0	0	-25,900	94.5
법정이전수입 <sup>2)</sup>	460,780	434,890	434,890	0	0	-25,890	94.4
비법정이전수입 <sup>3)</sup>	9,200	9,190	9,190	0	0	-10	99.9
기타이전수입	9,637	10,088	10,088	0	0	451	104.7
민간이전수입	9,637	10,088	10,088	0	0	451	104.7
<b>자체수입</b>	101,567	108,496	107,334	176	986	5,767	105.7
교수-학습활동수입	85,419	85,934	85,488	164	282	69	100.1
기본적교육수입	85,339	85,854	85,408	164	282	69	100.1
선택적교육수입	80	80	80	0	0	0	100.0
행정활동수입	805	828	828	0	0	23	102.9
사용료및수수료수입	805	828	828	0	0	23	102.9
자산수입	9,574	11,523	11,522	0	1	1,948	120.3
자산임대수입	398	576	575	0	1	177	144.5
자산매각대	9,176	10,947	10,947	0	0	1,771	119.3
이자수입	3,666	5,435	5,435	0	0	1,769	148.3
금융자산회수	0	637	637	0	0	637	순증
기타수입	2,103	4,139	3,424	12	703	1,321	162.8
제재금수입	428	542	300	0	242	-128	70.1
기타수입	1,620	3,119	3,095	0	24	1,475	191.0
과년도수입	55	478	29	12	437	-26	52.7
<b>지방교육채</b>	15,264	15,189	15,189	0	0	-75	99.5
<b>전년도이월금</b>	85,477	85,477	85,477	0	0	0	100.0
순세계잉여금	18,149	18,149	18,149	0	0	0	100.0
전년도이월금	67,328	67,328	67,328	0	0	0	100.0

2) 법정이전수입 : ① 지방교육세전입금 :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교육세 전액, ②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광역시 담배소비세의 45/100, ③ 시도세전입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광역시세 5/100, ④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학교용지 매입 경비의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2씩 부담)

3) 비법정이전수입 : ① 도서관법 제29조 제3항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금 ② 광역자치단체가 학교교육 관련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광역자치단체전입금 ③ 기초자치단체가 학교교육 관련 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기초자치단체전입금

## < 세입결산 과목별 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2-1) 이전수입

#### < 이전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비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이전수입	2,526,305	2,490,984	2,490,984	100.0	98.6	100.0
중앙정부이전수입	2,046,688	2,036,815	2,036,815	81.8	99.5	100.0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9,980	444,080	444,080	17.8	94.5	100.0
기타이전수입	9,637	10,088	10,088	0.4	104.7	100.0

- 이전수입 결산액(수납액)은 총 2조 4,909억 8,400만원으로 전년도 2조 4,413억 2,000만원보다 496억 6,4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8.6%이고, 미수납액은 없음.

- 관별로 분류하여 보면 전체 이전수입에서
  - 중앙정부이전수입은 2조 368억 1,500만원으로 81.8%
  -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4,440억 8,000만원으로 17.8%
  - 기타이전수입은 100억 8,800만원으로 0.4%를 차지하고 있음.
  
- 이전수입의 경우는 예산현액 대비 98.6%, 징수결정액 대비 100%로 수납되었으나,
  - 중앙정부이전수입(98억 7,300만원)과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259억원)에서 357억 7,300만원의 세입결손액(예산현액 - 수납액)이 발생하였음.
  - 이전수입의 비중이 높은 재정여건에서 대규모 미수납은 교육재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2013회계연도 중앙정부이전수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비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A)	수납률 (C/A)
중앙정부이전수입	2,046,688	2,036,815	2,036,815	100.0	-9,873	99.5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28,583	2,018,710	2,018,710	99.1	-9,873	99.5
보통교부금	1,952,983	1,935,211	1,935,211	95.0	-17,772	99.1
특별교부금	75,600	83,499	83,499	4.1	7,899	110.4
국고보조금	18,105	18,105	18,105	0.9	-	100.0

- 중앙정부가이전수입은 크게 나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으로 나누는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4)에 따라 국가로부터 전입되는 교부금으로써 예산현액 2조 285억 8,300만원 대비 △98억 7,300만원 감액된 2조 187억 1,000만원이 전입되었으며
  - 국고보조금은 교육부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으로써, 예산현액 181억 5백만원 전액이 수납되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분류되는데,
  - 보통교부금은 경기회복 지원 등에 따른 세수 결손 등으로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의 부족분 발생으로 인해 당초 예산액 (1조 9,691억 3,800만원) 대비 △339억 2,700만원이 줄어 1조 9,352억 1,100만원이 수납되었음.
  - 특별교부금은 국가시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대부분 추경재원 등으로 교부되는 바, 당초 예산액(154억 5,400만원) 보다 680억 4,500만원이 증액된 834억 9,900만원이 교부되었음.

4)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재원)

-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이를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 ② 교부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당해 연도의 내국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의 당해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27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연도의 「교육세법」에 의한 교육세 세입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 ③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9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의 재원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회계연도별 보통교부금 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당초예산액 (A)	최종예산액 (B)	세입결산액 (수납액)(C)	세입결산액 증감	
				당초예산 대비 (C-A)	최종예산 대비 (C-B)
2011	1,604,498	1,741,227	1,741,227	136,729	-
2012	1,729,564	1,778,337	1,778,337	48,773	-
2013	1,969,138	1,952,983	1,935,211	-33,927	-17,772

- 최근 3년간의 보통교부금 결산 현황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증액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2013회계연도의 경우엔 교육부의 세수결손으로 인해 유례없는 결손이 발생하였는바, 교육청 세입의 72%가량을 차지하는 보통교부금의 감액으로 인해 체계적인 교육재정 운용 등에 적잖은 악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사료됨.

**< 회계연도별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회계연도	당초예산액	최종예산액	세출결산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비고
2011	352,831	352,831	352,831	-	-	
2012	384,473	384,473	384,473	-	-	
2013	410,619	410,619	400,619	7,500	2,500	사고이월 (세수부족)

\* 201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2014.6) 참조

## < 201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

(단위 : 백만원, %)

과 목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비	예산현액대비	
					증감액 (C-A)	수납률 (C/A)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469,980	444,080	444,080	21.8	-25,900	94.5
법정이전수입	460,780	434,890	434,890	21.4	-25,890	94.4
지방교육세전입금 <sup>5)</sup>	282,342	272,995	272,995	13.4	-9,347	96.7
담배소비세전입금 <sup>6)</sup>	66,498	66,498	66,498	3.3	-	100.0
시도세전입금 <sup>7)</sup>	89,902	89,074	89,074	4.4	-828	99.1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sup>8)</sup>	22,038	6,322	6,322	0.3	-15,716	28.7
비법정이전수입	9,200	9,190	9,190	0.5	-10	99.9
광역자치단체전입금	8,550	8,540	8,540	0.4	-10	99.9
기초자치단체전입금	650	650	650	0.0	-	100.0

### ○ 이전수입중 가장 큰 감소요인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 예산현액 4,699억 8,000만원 대비 수납률이 94.5%로 차액인 △259억이 모두 인천시로부터의 지방교육세전입금과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인천시 재정난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법정이전수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28.7%로 157억 1,600만원이 미전입되었음.

5) 교육 및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지방교육세 총액을 부담함.  
(지방교육세 - 취득세액·등록세액·재산세액의 20%, 자동차세액의 30%, 균등할주민세액 10~25%, 담배소비세액 50%, 레저(경주·마권)세액의 40%.)

6) 교육 및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담배소비세 총액의 45/100를 부담함.

7) 교육 및 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시세(목적세 제외) 총액의 5/100를 부담함.

8)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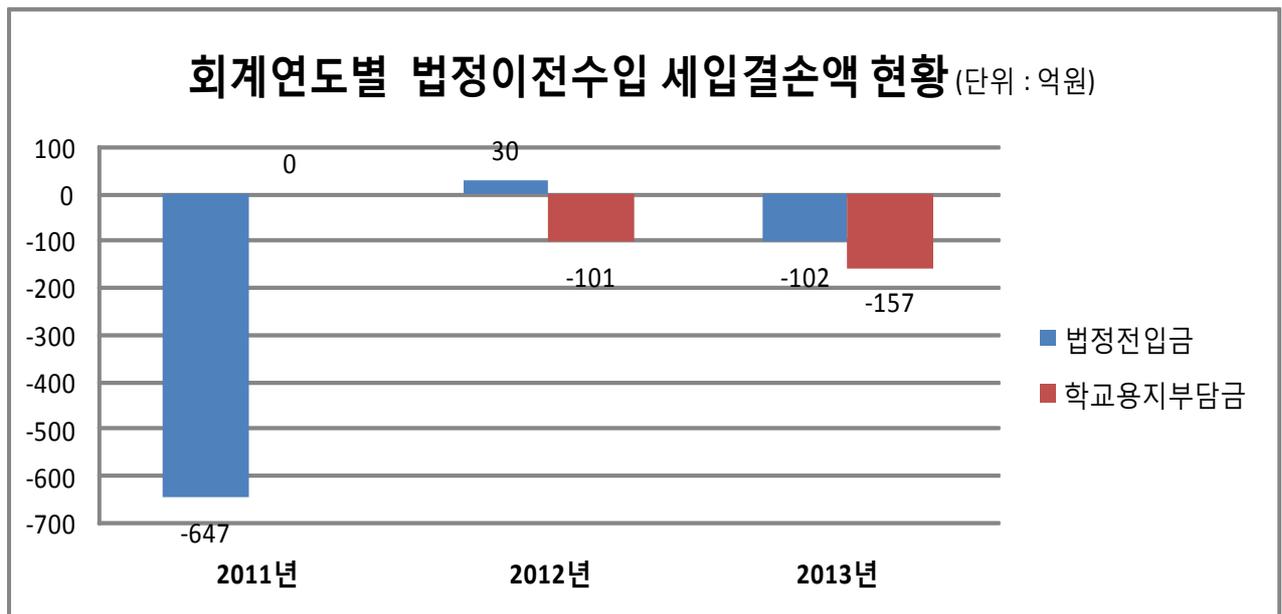
-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 < 회계연도별 법정이전수입 예·결산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예산현액 (A)	법정전입금	4,771	4,888	4,388
	학교용지부담금	329	317	220
	소 계	5,100	5,205	4,608
세입결산액 (수납액) (B)	법정전입금	4,124	4,918	4,286
	학교용지부담금	329	216	63
	소 계	4,453	5,134	4,349
세입결손액 (B-A)	법정전입금	-647	30	-102
	학교용지부담금	0	-101	-157
	합 계	-647	-71	-259

\* 법정전입금은 법정이전수입 중 학교용지부담금을 제외한 나머жим.(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 회계연도별 법정이전수입 예·결산 현황을 보면

- 2011년도에는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의 차액이 △647억, 2012년에는 △71억, 2013년에는 △259억원 발생하여 매년 큰 폭의 세입결손액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음.
- 2013년도 교육청 최종예산액은 법정전입금이 4,388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이 220억원으로, 이는 시청 당초예산액과 동일한 예산액임. 그러나 시청 최종예산액은 법정전출금이 4,286억원, 학교용지부담금은 156억원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교육청 예산액은 변동이 없어 예산차액이 발생한 것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sup>9)</sup>에 따르면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의 예산 불일치 현상은 매년 발생하는 문제점으로 시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95·12·29, 2000·12·30>

< 법정이전수입 과년도분 미전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법정전입금(A)				취득세 보전분(B)			학교용지 부담금 (C)	합계 (A+B+C)
	시도세	담배 소비세	지방 교육세	계	시도세	지방 교육세	계		
'01년	830			830					830
'02년	-143		1,546	1,403					1,403
'03년	1,104		2,291	3,395					3,395
'04년	856		3,205	4,061					4,061
'05년	1,230	0.152	4,237	5,467					5,467
'09년	0.005	0.044		0.049					0.049
'11년	10			10	7,239	14,479	21,718		21,728
'12년					3,080	6,160	9,241	-3,700	5,541
'13년					3,311	6,622	9,933	15,700	25,633
계	3,887	0.197	11,279	15,166	13,630	27,261	40,892	12,000	68,058

\* 예결위 요구자료 153쪽 참조

< '01~'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분 전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01~'11 미납분 연도별 전입계획액 (A)	전입현황		비고
		전입액 (B)	미전입액 (A-B)	
'12년	63	100	-37	'12.10.17.시 와 교육청 협 약 체결 ( '01~'11 미 납분 1,156억 에 대해 시는 '12~'19에 걸쳐 연도별 분할 납부)
'13년	180	23	157	
'14년	126			
'15년	200			
'16년	181			
'17년	202			
'18년	107			
'19년	97			
계	1,156	123	120	

\* 예결위 요구자료 154쪽 참조

- 2013년도까지 인천시로부터 미전입된 법정이전수입 과년도분 총액은 681억원으로, 그 세부내역으로는 '01~'11년도 정산오류로 인한 법정전

입금 미지금액 152억원(A), '11~'13년도 취득세 감면에 따른 보전 지원금 중 교육청분 409억원(B), '01~'11년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분 연도별 납부계획에 따른 미전입금 120억원(C)임.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내지 제3항<sup>10)</sup>에 따르면 법정 이전수입에 대한 전입금을 시는 때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고,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음.
- 그러나 2001년도부터 미전출된 과년도분이 681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교육재정의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세입결손과 과년도분 미전입금의 누적액 발생은 의존재원이 92%이상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 세입구조상 교육재정의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어렵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음.

○ 더불어,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가 2013.2.21 제정되어 2014.1.1부터 시행중인 바, 동 조례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sup>10)</sup>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②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12·30, 2006·12·30, 2007·7·20, 2010·3·31 법10219, 법10221, 2014·1·1>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 ③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0>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 중 100분의 70 이상을 매 분기별로 전출하되, 반기별로는 징수된 세액 대비 전출대상 전액을 정산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인천광역시 재정상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전출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음.

- 동 조례는 인천광역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목표가 원활히 실현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통해 접점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2) 자체수입

### < 자체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구성비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자체수입	101,567	108,496	107,334	100.0	105.7	98.9
교수-학습활동수입	85,419	85,934	85,488	79.6	100.1	99.5
행정활동수입	805	828	828	0.8	102.9	100.0
자산수입	9,574	11,523	11,522	10.7	120.3	100.0
이자수입	3,666	5,435	5,435	5.1	148.3	100.0
금융자산회수	0	637	637	0.6	순증	100.0
기타수입	2,103	4,139	3,424	3.2	162.8	82.7

- 자체수입의 결산(수납)액은 1,073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989억 9,500만원보다 83억 3,900만원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105.7%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를 보이고 있음.

- 이 중 교수-학습활동수입이 전체 자체수입의 79.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자산수입 10.7%, 이자수입 5.1% 순임.

### < 전년대비 자체수입 비율 현황 >

(단위: 백만원, %, %p)

회계 연도	세입결산액 (A)	자체수입 결산액							세입결산 대비 자체수입 비율 (B/A)
		계 (B)	교수-학습 활동수입	행정활동 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금융자산 회수	기타	
2013	2,698,985	107,335	85,488	828	11,522	5,435	637	3,425	4.0
2012	2,607,475	98,995	89,045	919	2,323	4,247		2,461	3.8
증감	91,510	8,340	-3,556	-92	9,199	1,188	637	964	0.2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로 결산액이 854억 8,800만원이며,
  - 전년도 수납액(890억 4,500만원)에 비해 4%(35억 5,600만원) 감소하였음. 이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수입 감소와 누리과정 지원대상 확대<sup>11)</sup>에 따른 유치원 수업료의 감소에 따른 것임.
- 자산수입은 활용가치가 없는 공유재산(토지)에 대한 매각 수입으로 결산액이 115억 2,200만원이며 전년도 수납액(23억 2,300만원)에 비해 496% 대폭 증가하였음.
  - 이 중 폐교자산 매각으로 10억 4,600만원, 그 외 자산매각으로 99억 100만원 중 (구)경인교대부속초교 공유재산 매각대금 80억 6,280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수입으로 5억 7,500만원 수납되었음.

11) 누리과정 지원사업 :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만 3~5세 대상 보육료 지원)

- '12년 보육료 지원대상 : 만5세 전계층, 만3~4세 소득하위 70%

- '13년 보육료 지원대상 : 만3~5세 전계층으로 확대(100%)

- 이자수입은 결산액이 54억 3,500만원, 기타수입은 34억 2,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이 각각 148.3%, 162.8%로 예산현액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납률을 보였으며, 수납액 또한 전년도 대비 각각 28%, 39%씩 증가하였음.
- 금융자산회수는 결산액이 6억 3,700만원으로 예산에 미편성된 수입이며, 그 세부내역은 전교조 인천지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3억 5,000만원(본 검토보고서 '9.예비비지출'(67쪽) 참조)과 원어민보조교사 주택보증금 2억 8,700만원을 회수하여 세입처리 된 것임. 원어민보조교사 주택보증금은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사업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주택보증금이 55개기관으로부터 회수 된 것임.

< 타광역시 자체수입·이자수입 비율 비교<sup>12)</sup> >

(단위: 백만원, %)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연평균증감률	
	자체수입 비율	이자수입 비율	자체수입 비율	이자수입 비율	자체수입 비율	이자수입 비율	자체수입 비율	이자수입 비율
평균	0.89	0.35	0.58	0.32	0.68	0.38	-6.8	2.2
서울	0.47	0.19	0.42	0.15	0.59	0.24	5.8	6.0
부산	0.62	0.29	0.46	0.29	0.62	0.27	0.0	-1.8
대구	0.87	0.42	0.72	0.52	0.79	0.55	-2.4	7.0
인천	1.19	0.48	0.47	0.17	0.38	0.16	-24.8	-24.0
광주	0.68	0.38	0.70	0.40	0.78	0.50	3.5	7.1
대전	1.38	0.27	0.54	0.32	0.48	0.38	-23.2	8.9
울산	1.05	0.41	0.76	0.42	1.09	0.56	0.9	8.1

\* 자료 : 「2013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한국교육개발원, 2013)

12) 자체수입 : 교수-학습활동비,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이자수입, 적립금수입, 금융자산회수, 기타수입  
 (\* 교수-학습활동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가 대부분으로 학생수에 따른 시·도교육청별 편차가 심해 상대적 비교가 어려움. 따라서 교수-학습활동수입을 제외한 자체수입 비율을 비교함.)

\* 자체수입 비율(%) = (자체수입 결산액 / 총세입결산액) × 100

\* 이자수입 비율(%) = (이자수입 결산액 / 총세입결산액) × 100

○ 타광역시와의 자체수입과 이자수입 비율을 비교해 볼 때

- 2010년도에 인천의 경우 자체수입비율이 1.19%, 이자수입비율이 0.48%로 평균보다 높았으나, 2012년도에는 인천의 자체수입비율이 0.38%, 이자수입비율이 0.16%로 급격히 감소하였음.
- 이에 교육청에서는 “2013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증대 계획”(13.8.27)<sup>13)</sup>을 수립·추진하여 2013년도 자체수입비율이 0.81%로 전년대비 113% 증가하였으며, 이자수입비율은 0.20%로 전년대비 25% 증가하는 등 성과를 보임.
- 앞으로도 자체수입 증대를 위해 체계적인 자금운용방식 개선 등 교육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2-3) 지방교육채

#### < 지방교육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금융기관차입금	15,264	15,189	15,189	99.5	100.0

○ 지방교육채의 결산(수납)액은 151억 8,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률은 99.5%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100%임.

<sup>13)</sup> 2013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자체수입 증대 계획(13.8.27)

1. 자체수입 확충 :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징수 철저,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 확대, 유희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 자산 매각 적극 추진
2. 이자수입 증대 : 예치금액 증대 및 다양한 예치기간 적용, 고이율 상품 확보, 자금의 조기(적기) 확보, 선진 자금운용 방법 도입
3. 자금 교부 및 운용 방법 변경 : 각과 및 사업소의 일상경비 자금보유 한도액을 지정(5천만원 이하), 자금 신청시 마다 교부하던 방식에서 월 2회 신청으로 변경

### < 지방교육채 발행 조서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상환재원	상환조건	승인액	발행액	미상환액	발행사유
2013	학교신설비	교부금	3.60%(변동) 2년거치 3년상환	15,264	15,189	15,189	세수금 결손 에 따른 교 부금 보전

\* 예결위 요구자료 154쪽 참조

- 2013년도 지방교육채 발행은 학교신설 관련 재원조달을 위한 것으로, 상환주체가 중앙정부(교육부)이기는 하나 향후 국내경기 침체 지속, 실물경기 둔화 등으로 세입여건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환 시까지는 교육청의 재정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사료됨.

#### 2-4) 전년도이월액

### < 전년도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비율	
				예산현액 대비 (C/A)	징수결정액 대비 (C/B)
전 년 도 이 월 액	85,477	85,477	85,477	100.0	100.0
순 세계 잉 여 금	18,149	18,149	18,149	100.0	100.0
전년도이월사업비	67,328	67,328	67,328	100.0	100.0

- 전년도 이월액의 세부내역은
  - 201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181억 4,900만원과
  - 2012회계연도 명시·사고이월비 673억 2,800만원임.

### 3) 불납결손 및 미수납액 현황

#### < 전년도 대비 불납결손액 현황 >

(단위 : 천원, %)

연도	과 목	불납결손액		사 유 별			
				비율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2012	합 계	400,406	100.0	0	0	116,931	283,475
	입학금·수업료	134,723	33.6	0	0	116,931	17,792
	과년도수입	265,683	66.4	0	0	0	265,683
2013	합 계	175,953	100.0	0	4,000	145,532	26,421
	입학금·수업료	163,779	93.1	0	0	145,532	18,247
	과년도수입	12,174	6.9	0	4,000	0	8,174

\* 201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서 441쪽 참조

#### ○ 2013년도 불납결손액<sup>14)</sup>은 총 1억 7,595만원으로

- 사유별로 거소불명 400만원, 시효완성<sup>15)</sup> 1억 4,553만원, 기타 2,642만원으로 과년도수입의 불납결손액이 2012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음.
- 그러나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학생수와 그에 따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비해 21%가량 늘어나 이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할 것임.

14) 불납결손액은 정당하게 징수결정되어 징수하여야 할 사항이나 채무면제의 결정 통지, 시효의 완성, 기타의 사유로 징수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결손 처분을 하는 것임.

15) 채권 소멸 시효

-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 완성
- 3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 이자, 급료, 부양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 도급받은 자,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 1년의 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 학생의 교육비(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등),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등

### <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합계	사유별					
		채무자 징수유예	채무자 거소불명	채무자 재력부족	납부자 태만	재산 압류중	기타
2010년	1,186,175	-	-	666,631	463,019	14,934	41,591
2011년	1,060,724	12,015	200,191	478,808	258,359	17,477	93,874
2012년	865,195	1,377	717	496,997	242,448	16,072	107,583
<b>2013년</b>	<b>985,774</b>	<b>11,446</b>	<b>4,778</b>	<b>541,234</b>	<b>315,953</b>	<b>9,000</b>	<b>103,363</b>
	(100.0)	(1.2)	(0.5)	(54.9)	(32.1)	(0.9)	(10.5)
입학금 및 수업료	281,959 (28.6)	6,377		22,918	245,741		6,923
자산수입	974 (0.1)			974			
기타수입 <sup>16)</sup>	702,842 (71.3)	5,069	4778	517,343	70,211	9,000	96,441

\* ( )는 합계 대비 항목별 비중임.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서 445쪽 및 예결위요구자료 41쪽 참조

#### ○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을 보면

-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7%의 감소율을 보이다가 2013년 도에는 미수납액이 9억 8,577만원으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음.

#### ○ 미수납액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기타수입(71.3%)이 7억 284만원으로, 기타수입의 미수납 사유 중 '채무자 재력부족'(73.6%)의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채무자의 경제력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운 채권일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수납 곤란을 이유로 방치할 경우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며 「지방재정법」 제82조17)에 의한 소멸시

16) 기타수입 : 제재금수입(변상금, 연체료, 과태료, 기타제재금수입), 그외수입, 과년도수입

17)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효가 지난 후 자동으로 불납결손처리가 될 경우에는 채무자로 하여금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별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입학금 및 수업료는 미수납액이 2억 8,195만원으로 미납사유가 '납부자 태만'(87.2%)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권 소멸시효가 1년인 단기채권인 점을 고려할 때 실기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세입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임.

#### 4) 연도별 잉여금 처리현황

##### < 연도별 잉여금 처리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세계잉여금 (A=B+C+D+E)	이월액 (B)	국고보조금 잔액 (C)	지방채상환 (D)	순세계잉여금 (A-B-C-D)
2011	33,259	38,335	29	-	-5,105
2012	90,177	67,328	-	4,700	18,149
2013	63,279	51,467	0.1	2,400	9,412

- 2011년도회계연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51억 5백만원으로 마이너스 (-) 결산이었으나 2012년도부터 흑자로 돌아서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94억 1,200만원 임.
- 2013년도 잉여금 처리현황을 보면
  - 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액 2조 6,989억 8,500만원에서 세출결산액 2조 6,357억 500만원을 차감한 차액인 632억 7,900만원임.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도 제1항과 같다

-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84억 5,000만원, 사고이월비 313억 3,400만원이며 계속비이월비는 116억 8,200만원임.
- 지방채상환액 24억원은 「지방재정법」 제52조18)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19)에 의거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을 채무상환에 활용한 것임.

### < 2013회계연도 차입금 채무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채무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차입금	130,400	12,789	15,189	2,400	143,189	-

\* 2013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서 417쪽 참조

- 201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액, 국고보조금잔액, 지방채상환액을 차감하고 순이익 94억 1,200만원이 발생되었음.

### < 회계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 >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다음연도 반영액		
	금액 (A)	전년대비		본예산 (B)	반영비율 (B/A)	최종예산
		증감	비율			
2011	-5,105			25,285	595.3	0
2012	18,149	23,254	455.5	27,589	152.0	18,149
2013	9,412	-8,737	-48.1	10,000	106.2	9,412

18)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金)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19)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기금의 조성)

- ②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은 매년 교육비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20이상을 직접 상환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에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2013회계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1,200만원으로 직전회계연도 보다 △48.1%인 △87억 3,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이전수입의 세입결손으로 인해 이전 회계연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된 것으로 판단됨.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61조<sup>20)</sup>에 의거 결산상 잉여금 중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이입하되, 부득이한 경우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도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보면, 2012년도까지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추정치와 실제 결산결과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본예산 세출재원에 대한 감추경을 불가피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긴급재정수요 발생에 대비한 교육청의 재정여력을 현저히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재정분석과 전망이 요구된다 할 것임.
  - 2014년도의 경우는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100억원 편성한 바 있으며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 94억 1,200만원으로 결산전망과 실제 결산결과가 근소한 차이를 보여, 향후에도 정확한 세입·세출추계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sup>20)</sup>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0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과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해당액을 공제한 후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산 또는 기금에 편입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1조(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서 전년도 세입금의 수납액으로써 채무확정액과 법 제52조 각 호의 금액 및 지방채증권 또는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한 후에 발생한 잉여금에 대하여는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자금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 이전이라도 이를 당해연도의 세입에 이입할 수 있다.

### 3. 세출 결산

#### 1)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성립후 증감 <sup>21)</sup> (B)	예산현액 (C=A+B)	지출액 (D)		다음연도 이월액 (E)		불용액 (F=C-D-E)	
			금액	비율 (D/C)	금액	비율 (E/C)	금액	비율 (F/C)
2,661,284	67,328	2,728,613	2,635,705	96.6	51,467	1.9	41,440	1.5

○ 2013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은

- 예산액 2조 6,612억 8,400만원과 예산성립후 증감액 673억 2,8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조 7,286억 1,300만원으로,
- 이 중 지출액은 2조 6,357억 5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96.6%로 전년도(96.3%)에 비해 0.3%p 증가하였음.
- 다음연도 이월액은 514억 6,700만원(1.9%)으로 전년도(1.6%) 대비 0.3%p 증가하였고
- 불용액은 414억 4,000만원, 불용률은 1.5%로써 전년도(1.1%)에 비해 0.4%p 증가하였음.

21) 예산성립 후 증감액 : 전년도이월액, 예비비 지출 결정액, 전용액, 이용 및 이체액

## 2)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현액 (A)	구성비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불용액 (D=A-B-C)	
			금액	비율 (B/A)	금액	비율 (C/A)	금액	비율 (D/A)
합 계	2,728,613	100.0	2,635,705	96.6	51,467	1.9	41,440	1.5
유아및초중등교육	2,630,405	96.4	2,542,083	96.6	51,200	1.9	37,122	1.4
인적자원운용	1,529,842	56.1	1,523,873	99.6	48	0.0	5,921	0.4
교수-학습활동지원	173,199	6.3	168,106	97.1	1,759	1.0	3,333	1.9
교육복지지원	262,102	9.6	256,993	98.1	0	0.0	5109	1.9
보건/급식/체육활동	66,062	2.4	62,316	94.3	1,432	2.2	2314	3.5
학교재정지원관리	416,554	15.3	415,357	99.7	352	0.1	846	0.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82,647	6.7	115,438	63.2	47,609	26.1	19,600	10.7
평생·직업교육	12,971	0.5	12,185	93.9	125	1.0	661	5.1
평생교육	12,921	0.5	12,135	93.9	125	1.0	661	5.1
직업교육	50	0.0	50	100.0	0	0.0	0.1	0.2
교육일반	85,237	3.1	81,438	95.5	142	0.2	3,657	4.3
교육행정일반	16,024	0.6	14,897	93.0	106	0.7	1,022	6.4
기관운영관리	16,301	0.6	14,657	89.9	36	0.2	1,608	9.9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2,907	1.9	51,885	98.1	0	0.0	1022	1.9
예비비및기타	5	0.0	0	0.0	0	0.0	5	100.0

### ○ 부문별 예산현액 구성비를 보면

- 유아 및 초중등교육이 2조 6,304억 500만원 96.4%의 비율로 전년 (95.3%) 대비 1.1%p 증가
- 평생 및 직업교육이 129억 7,100만원 0.5%로 전년도와 동일
- 교육일반은 852억 3,700만원 3.1%로 전년(4.2%) 대비 1.1%p 감소하였음.

○ 정책사업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 인적자원운용 지출액이 1조 5,238억 7,3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57.8%를 차지하여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학교재정 지원관리가 4,153억 5,700만원으로 15.8%에 해당하였으며, 교육복지 지원은 2,569억 9,300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의 9.8%를 차지하였음.
- 이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154억 3,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26.1%인 476억 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196억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월 사유와 집행의 적정성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년대비 정책사업별 세출결산 증감내역 >

(단위 : 백만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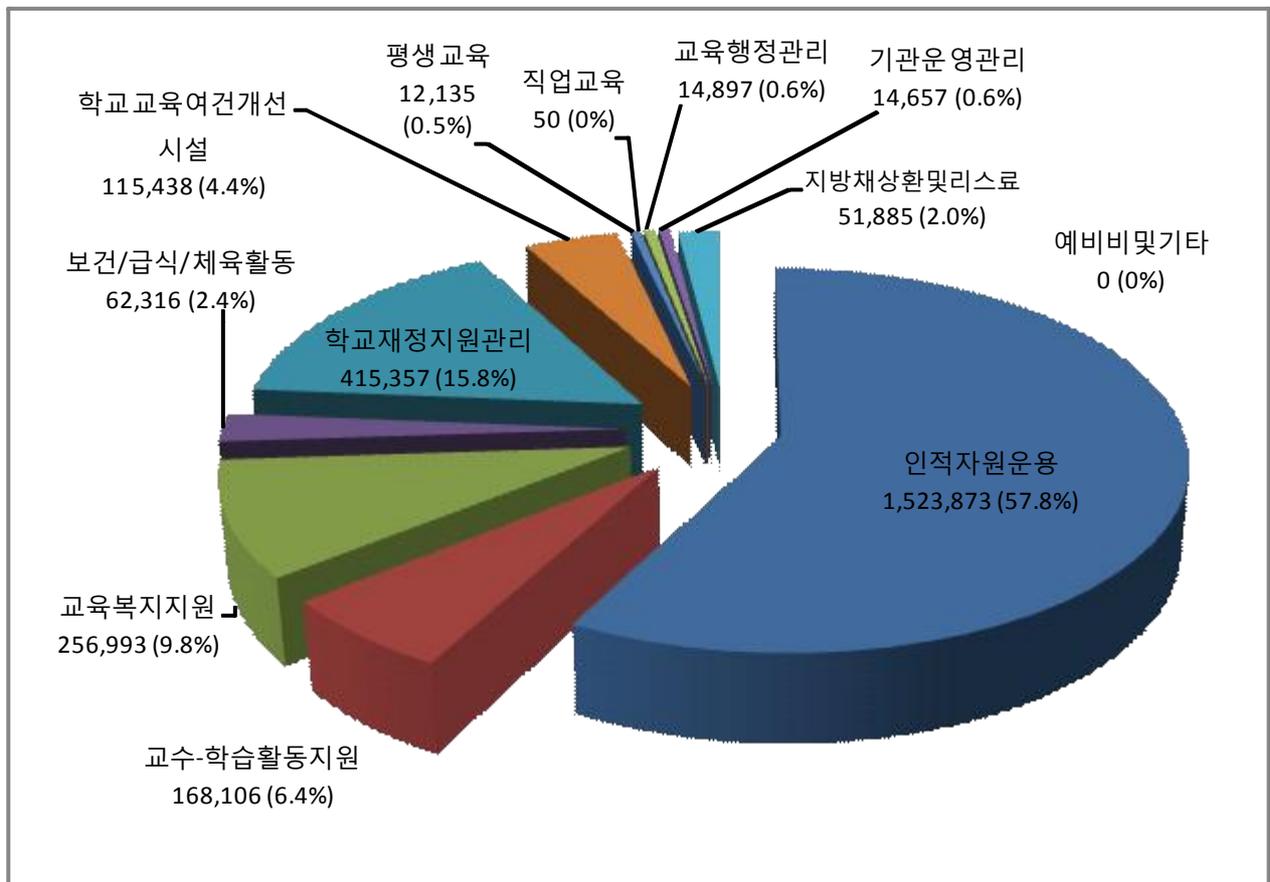
구 분	2012년 세출결산 (A)		2013년 세출결산 (B)		증 감 (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비율
합 계	2,517,297	100.0	2,635,705	100.0	118,408	4.7
유아및초중등교육	2,410,536	95.8	2,542,083	96.4	131,547	5.5
인적자원운용	1,436,999	57.1	1,523,873	57.8	86,874	6.0
교수-학습활동지원	228,503	9.1	168,106	6.4	-60,397	-26.4
교육복지지원	149,633	5.9	256,993	9.8	107,360	71.7
보건/급식/체육활동	35,411	1.4	62,316	2.4	26,905	76.0
학교재정지원관리	429,001	17.0	415,357	15.8	-13,644	-3.2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30,986	5.2	115,438	4.4	-15,548	-11.9
평생·직업교육	12,758	0.5	12,185	0.5	-573	-4.5
평생교육	12,583	0.5	12,135	0.5	-448	-3.6
직업교육	174	0.0	50	0.0	-124	-71.3
교육일반	94,002	3.7	81,438	3.1	-12,564	-13.4
교육행정일반	16,134	0.6	14,897	0.6	-1,237	-7.7
기관운영관리	26,909	1.1	14,657	0.6	-12,252	-45.5
지방채상환및리스크	50,950	2.0	51,885	2.0	935	1.8
예비비및기타	8	0.0	0	0.0	-8	순감

○ 주요 증액 현황으로는

- 교육복지지원이 누리과정 지원사업 확대 등 교육복지사업 국정과제의 이행으로 전년 대비 1,073억 6,000만원인 71.7%나 증액되었으며,
- 보건/급식/체육활동이 전년 대비 269억 500만원인 76%나 증액된 사유는 학교급식비정규직인건비와 학교급식운영비지원 예산이 2012년도에는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에 편성되어 있었으나 2013년도엔 당해 정책사업으로 편성과목이 변경된 데 따른 것임.

< 세출결산 정책사업별 구성비 >

(단위 : 백만원)



○ 주요 감액 현황으로

- 교수-학습활동지원은 다양한 학습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교수법과 학습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603억 9,700만원인 △26.4%가 감액되었으며
- 직업교육은 전년대비 1억 2,400만원인 △71.3%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직업교육 관련 사업의 폐지 및 규모 축소에 따른 것임.
- 기관운영관리는 122억 5,200만원인 △45.5%가 감액되었는데 이는 재원부족에 따른 교육행정기관시설비를 대폭 삭감한데 따른 것임.

○ 이와 같이 유아 및 교육복지관련 예산액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가운데 교육청의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해 필수 및 주요사업의 예산에 집중되는 현상을 낳아 자율적 운영사업의 범위의 축소와 타사업의 예산을 감소시키는 현상이 불가피하다 할 것임.

### 3) 불용액

#### < 연도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A)	지출액	다음연도이월액	불용액(B)	불용률(B/A)
2009	2,544,740	2,218,050	191,802	134,888	5.3
2010	2,583,615	2,326,559	215,618	41,438	1.6
2011	2,712,056	2,578,930	38,336	94,790	3.5
2012	2,613,884	2,517,298	67,328	29,258	1.1
2013	2,728,613	2,635,705	51,467	41,441	1.5

○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불용액이 414억 4,100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1.5%로 2012회계연도(292억 5,800만원) 대비 41.6%인 12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음.

### < 연도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금액	예산현액 대비비율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1년	2,712,056	94,791	3.5	1,140	1.2	0	0.0	66,743	70.4	26,908	28.4
2012년	2,613,884	29,258	1.1	2,303	7.9	3,751	12.8	10,458	35.7	12,746	43.6
2013년	2,728,613	41,440	1.5	16,457	39.7	9,820	23.7	101	0.2	15,062	36.3

- 특히,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전년도(23억 300만원)에 비해 6배가 넘는 164억 5,700만원으로 증가하여 전체 불용액중 39.7%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 < 사업별 원인별 불용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 업 별	예산 현액	불용액		불용액 원인별 내역							
				계획 변경 및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합 계	2,728,613	41,440	100.0	16,457	39.7	9,820	23.7	101	0.2	15,062	36.3
인적자원운용	1,529,842	5,921	14.3	0	0.0	192	0.5	15	0.04	5,713	13.8
교수-학습활동지원	173,199	3,333	8.0	532	1.3	1,632	3.9	0	0.0	1,170	2.8
교육복지지원	262,102	5,109	12.3	23	0.1	4,591	11.1	0	0.0	495	1.2
보건/급식/체육활동	66,062	2,314	5.6	1,499	3.6	71	0.2	0	0.0	743	1.8
학교재정지원관리	416,554	846	2.0	0	0.0	248	0.6	0	0.0	598	1.4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182,647	19,600	47.3	14,404	34.8	827	2.0	0	0.0	4,369	10.5
평생교육	12,921	661	1.6	0	0.0	611	1.5	0	0.0	50	0.1
직업교육	50	0.2	0.0005	0	0.0	0.2	0.0005	0	0.0	0	0.0
교육행정일반	16,024	1,022	2.5	0	0.0	613	1.5	58	0.1	350	0.8
기관운영관리	16,301	1,608	3.9	0	0.0	1,034	2.5	2	0.0	572	1.4
지방채상환및리스료	52,907	1,022	2.5	0	0.0	0	0.0	25	0.1	997	2.4
예비비및기타	5	5	0.01	0	0.0	0	0.0	0	0.0	5	0.01

○ 사업별 불용액 발생 현황을 보면,

-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불용액의 47.3%인 196억원이 발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인적자원운용이 14.3%로 59억 2,100만원, 교육복지지원이 12.3%로 51억 900만원이 발생하였음.

○ 발생원인별로 살펴보면

- 계획변경 및 취소가 전체 불용액의 39.7%(164억 5,700만원), 집행잔액이 36.3%(150억 6,200만원)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요예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일 수 있음. 따라서 계획수립 시 실행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업 소요예산에 대한 반드시 실제 집행가능한 부분만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예산절감으로 인한 불용액은 98억 2,000만원으로 전체 불용액의 23.7%로 재원 부족에 직면한 교육청의 현실에 맞게 예산절감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라 사료됨.

## < 불용액 원인 중 「계획변경 및 취소」 된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b)	불용률 (b/a)	불용사유	계획변경· 취소결정일
창의인성 교육과	방과후 학교운영	13,566	13,535	0	31	0.2	대 학주도예비사회적기 업지원사업 중단으로 인한 미집행(22,500천 원)	'13.09.02
창의인성 교육과	유아교육 지원	456	445	0	12	2.6	- 학습연구년 제 운영 기간 단축(5,000천원) - 행정처분에 따른 인 성교육 우수유치원 1 개원 제외(6,000천원)	'13.08.08 '13.07.23
교육과정 기획과	외국어교육 활동지원	2,805	2,276	0	530	18.9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2,3급)의 수능미연계 로 2013국가영어능력 평가시험 2,3급개발및 IBT정보화 위탁사업 중단(521,040천원)	'13.12.09.
평생교육 체육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7,979	4,964	1,432	1,583	19.84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추진(계산여고) 계획 변경으로 추후 재집행 (1,499,000천원)	'13.12.31
복지 재정과	학교시설 (이월)	5,500	0	0	5,500	100	교육청과 인천도시공 사간 비즈니스고 토지 매입비 이견으로 인하여 추후 재집행 (5,500,000천원)	협의진행중
복지 재정과	학교 증개축 (이월)	10,136	1,232	0	8,904	87.8	백석중(63,027천원)사 유지 수용재결로 인한 추후 집행 및 연평초 중고교통합교사동 신 축공사(8,840,769천 원) 관련 민원발생으 로 공사중지 후 계획 변경	'13.04.03

\* 예결위 요구자료 35쪽 참조

○ 불용액 원인 중 가장 비중이 큰 계획변경 및 취소에 대한 사업내역을 보면

- 총 6건 165억 6,0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중 학교시설 관련 예산에  
서 발생한 불용액이 3건 159억 8,700만원 96.5%를 차지하고 있음. 대  
부분 예산편성 후 집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을 포기하거

나 취소된 경우이기는 하나, 다수의 사례가 예산편성전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절차에 대한 사전 진단 등이 미흡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어 보다 현실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특히, 학교신설(비즈니스고 토지매입비) 불용액 55억원과 학교증개축(연평초중고교통합교사동 신축공사) 불용액 88억 4,077만원의 경우, 두개 사업 모두 2012년도에 이월된 사업으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지연 및 민원발생 등으로 인한 사유로 2013년에도 예산이 불용되는 것임. 시설 사업특성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추진이 지연시 많은 예산이 사장되는 만큼 보다 실행가능한 추진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이 요구됨.
- 방과후학교운영(대학주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불용액 2,250만원, 유아교육지원 불용액 1,200만원은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시점이 2013. 7~9월로 발생한 불용액을 불용시키기 보다 회계연도내 감추경 등을 통해 회계연도내 세출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이 필요할 것임.
- 학교급식환경개선(계산여고 급식시설현대화 사업)의 경우, 계획변경으로 14억 9,900만원이 전액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2013년 9월에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성립전경비로 편성 후 2013년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으나 '학교급식시설환경개선사업 업무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동 사업 주관청이 교육청에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고 절대공기 부족 등의 문제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후 2014년 예산에 반영 후 추진예정임.

## < 10억원 이상 과다 불용액 발생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사업 (부서명)	2013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예산 현액	지출 액	이월 액	불용 액	불용 률	불용 사유	예산 현액	지출 액	이월 액	불용 액	불용 률	불용 사유
교원인건비 (정책기획관)	989,292	985,219	0	4,073	0.4	집행잔액	962,086	961,909	0	176	0.02	집행잔액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 강권지원 (창의인성교육과)	15,954	11,362	0	4,591	28.8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4,784	14,784	0	0	0.0	
학교급식 환경개선 (평생교육체육과)	7,979	4,964	1,432	1,583	19.8	계획변경 집행잔액	0	0	0	0	0	
학교신설 (이월) (복지재정과)	5,500	0	0	5,500	100	교육청과 인천 도시공공간 비 즈니스고 토지 매입비 이견으 로 인하여 추후 재집행	10,829	5,329	5,500 (명시 이월)	0.001	0.0	
학교증개축 (이월) (복지재정과)	10,136	1,232	0	8,904	87.8	백석중 사유지 수용재결로 인 한 추후 집행 및 연평초중고 교통합교사동 신축공사 관련 민원 발생으로 공사중지 후 계 획변경	10,786	540	10,057 (사고 이월)	189	1.8	연평초 중고교 통합교 사동신 축감리 1차공 사집행 잔액

\* 예결위 요구자료 21쪽 참조

○ 불용액이 10억원 이상 발생된 사업을 검토하면,

- 교원인건비의 경우, 불용액이 40억 7,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이 0.4%에 불과하나 직전연도에는 불용액 1억 7,600만원이 발생된 것과 비교하여 대폭 증가한 바, 인건비 산정과 운용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실소요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저소득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지원 사업은 예산현액 159억 5,400만 원에서 113억 6,200만원 집행되어 45억 9,1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불용된 내역을 보면 예산절감계획으로 45억원, 집행잔액으로 9,100만원이 발생된 것임.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한 직전연도 집행액은 147억 8,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1%나 사업이 축소되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폭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절감을 이유로 꼭 필요한 예산이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억원이상 사업중 불용률 30%이상 발생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

세부 사업 (부서명)	2013회계연도						2012회계연도					
	예산 현액	지출 액	이월 액	불용 액	불용 률	불용 사유	예산 현액	지출 액	이월 액	불용 액	불용 률	불용 사유
예산관리 (정책기획관)	629	375	0	254	40.4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16	881	0	135	13.3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본청 시설관리 (총무과)	497	335	0	162	32.5	-예산절감:6,150천원 -사무실 환경개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 각종 공사 집행잔액 : 23,275천원 -기록관동 1층 공사 미시행에 따른 잔액 : 132,289천원	9,828	9,658	19	151	1.5	- 예산절감 :16,800천원 -인천교육종합정보 센터구축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 71,023천원 -외벽 청소 및 청사 환경개선공사 집행 잔액 : 63,546천원
학교신설 (이월) (복지재정과)	5,500	0	0	5,500	100	교육청과 인천도시공공간 비즈니스고 토지매입비 이견으로 인하여 추후 재집행	10,829	5,329	5,500	0.001	0.0	-
학교증개축(이월) (복지재정과)	10,136	1,232	0	8,904	87.8	백석중 사유지 수용 재결로 인한 추후 집행 및 연평초중고교 통합교사동 신축 공사 관련 민원발생으로 공사중지후 계획변경	10,786	540	10,057	189	1.8	연평초중고교 통합교사동신축 감리차공사 집행잔액

\* 예결위 요구자료 21쪽 참조

- 1억이상 사업중 30%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사업을 보면
  - 예산관리 불용액 2억 5,400만원은 에듀파인 학교회계시스템 예산절감에 따른 포상금 집행잔액 1억 3,200만원, 예산편성 관련 운영비 등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억 2,200만원이 발생된 것이며
  - 본청 시설관리 불용액 1억 6,200만원은 기록관동 1층 공사 미시행에 따른 잔액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내역 >

(단위 : 백만원, %)

부서 (기관명)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불용률 (d/a)	불용 사유
복지재정과	일시차입금 관리	25	0	0	25	100	일시차입 사유 미발생
	학교신설 (이월)	5,500	0	0	5,500	100	교육청과 인천 도시공사 간 비 즈니스고 토지 매입비 이견으 로 인하여 추후 재집행

\* 예결위 요구자료 33쪽 참조

-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된 사업은 2건 55억 2,500만원으로
  - 일시차입금<sup>22)</sup> 2,500만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액 불용된 것이며
  - 학교신설(이월) 55억원은 명시이월된 비즈니스고 토지매입비로, 교육청과 인천도시공사 간 토지매입비 이견으로 인하여 추후 재집행이 결정되어 전액 불용된 것임. 비즈니스고는 2012. 9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으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의지가 반영되어 소요예산을 편성하고 추진코자 하였으나 사업의 계속된 지연으로 사업예산이 결과

<sup>22)</sup> 일시차입금 : 세계상 일시적인 자금의 부족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 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자하여 쓰고 당해 연도내의 수입으로서 상환해야 하는 것을 말함. 일시 차입금은 세출의 재원이 될 수 없고 일시적으로 세출이 세입을 초과하는 지급자금의 부족이 생길 때 사용(지방재정법 제14조)

적으로 사장되는 만큼 세출재원의 한정성과 적기 집행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 사업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과 예산편성 계획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4) 예산 이용 · 전용 및 이체

##### < 2013회계연도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건 수	예산현액 (A)	변경액 (B)	비율 (B/A)
합 계	100	1,743,300	1,423,554	81.7
예산이용	-	-	-	-
예산전용	19	55,465	5,255	9.5
예산이체	81	1,687,835	1,418,299	84

- 2013회계연도 예산 이용, 전용, 이체는 총 100건의 1조 4,235억 5,400만원이 발생함.
- 예산이용 실적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19건 52억 5,500만원, 예산이체는 81건 1조 4,182억 9,900만원이 변경 처리되었음.

##### < 연도별 예산 이용 · 전용 ·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합 계		예산이용		예산전용		예산이체	
	건수	변경액	건수	변경액	건수	변경액	건수	변경액
2011	10	1,433	-	-	10	1,433 (0.05)	-	-
2012	36	39,833	-	-	9	3,394 (0.13)	27	36,439 (1.4)
2013	100	1,423,554	-	-	19	5,255 (0.20)	81	1,418,299 (53.3)

\* ( )는 총예산현액 대비 비율

○ 회계연도별 현황을 보면,

- 예산이용은 3년간 실적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2011년도에 총예산현액 대비 0.05%, 2012년도에 0.13%, 2013년도에 0.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음. 특히, 예산이체의 경우 2013년도에 총예산현액 대비 53.3%에 해당되는 금액의 예산이체가 이루어져 과년도에 비해 급격하게 증가하였음.

#### 4-1) 예산 이용

-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23)의 단서규정에 따라 정책사업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정책사업은 입법과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집행하는 것임.
- 2011년부터 2013년도까지 예산이용 실적은 없어 예산편성시 예산수요를 정확히 예측하여 추진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에 반해 예산전용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예산편성 당시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가 요구됨.

#### 4-2) 예산 전용

-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2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사업 내에 예산범위 안에서 행정과목인 각 단위사업의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임.

23)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외 예산 이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이용할 수 있다.

24)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 < 연도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1		2012		2013	
	예산전용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전용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전용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10	-9.1	9	-10.0	19	111.1
전용액	1,433	-60.0	3,394	136.8	5,255	54.8

○ 2013회계연도 예산 전용액은 19건에 52억 5,500만원으로

- 전년대비 전용 건수는 111.1% 전용액은 54.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1년도에 총예산현액 대비 0.05%를 차지하던 전용액이 2013년도에는 0.20%로 4배나 증가하였음.

### < 분기별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합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건 수	19	4	2	3	10
전용액	5,255	1,228	467	216	3,344
전용률	100.0	23.4	8.9	4.1	63.6

- 또한, 예산 전용의 63.6%에 해당하는 10건 33억 4,400만원이 4/4분기에 발생되어, 연도 말 사업별 예산 과부족 문제를 예산전용으로 상쇄시킨 것은 아닌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 주요 예산 전용 현황 >

(단위 : 백만원)

소관	과 목		예산액	전용액		전용승인 일자	전용 사유
	세부사업	목		증	감(△)		
강화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건설비	3,865	0	1,000	2013.02.2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5조 및 19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사립학교재정지원조례」 제1조, 제3조, 제4조에 의거 사립학교 시설공사비 지원을 위해 건설비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273	1,000	0		
정책 기획관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유형자산	91	0	91	2013.02.25.	인천한누리학교 시설교육환경개선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0	91	0		
교육과학 연구원	교육행정 정보시스 템운영	유형자산	92	55	0	2013.05.06.	노후 전산장비의 잦은 장애로 비교적 우선 순위가 낮은 소프트웨어 구입 예산을 유형자산으로 전용
		무형자산	98	0	55		
정책 기획관	특별교육 재정수요 지원	투자교육 지원사업비	0	170	0	2013.07.25.	제6차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 결정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을 투자교육지원사업비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0	0	170		
교육과정 기획과	원어민교 사및보조 강사운영	인건비	292	51	0	2013.10.29.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학교회계전출금을 인천교육연수원 원어민 인건비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16,094	0	51		
북부교육 지원청	유치원교 육여건개 선	건설비	0	111	0	2013.01.16.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교육지원청 시행에 따라 예산 전용(부원병설 74,000천원, 부일병설 37,000천원)
		학교회계 전출금	349	0	111		
교육과정 기획과	학교운영 비지원	건설비	0	412	0	2013.05.24.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시설공사 교육청 시행에 따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된 진산과학고 본관 리모델링 예산을 건설비로 전용
		학교회계 전출금	0	0	412		
서부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운영비	277	0	206	2013.11.05.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시설과-5413 (2013.10.21.)호 “석면관리종합대책”에 의거 석면조사용역의 집행잔액을 석면교체시설비로 전용
		건설비	6,691	206	0		
남부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운영비	238	0	174	2013.11.05.	"
		건설비	12,047	174	0		
동부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운영비	268	0	165	2013.11.05.	"
		건설비	5,547	165	0		
북부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운영비	207	0	153	2013.11.05.	"
		건설비	8,456	153	0		

\* 예결위 요구자료 57쪽 참조

○ 주요 예산 전용 현황을 보면,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강화교육지원청)은 덕신고 본관동 증개축 공사비로 당초 본예산에 10억원을 '건설비'로 편성하였으나 '건설비' 목으로는 사립학교에 공사비를 교부하거나 교육행정기관에서 직접 공사발주가 불가하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한 것임.
- 또한, 유치원교육여건개선(북부교육지원청)과 학교운영비지원(교육과정기획과)의 전용 건은 '각급학교 및 사업소 공사시행 개선방안(교육시설과-3130호, 2012.6.19)'에 의거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시설공사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서 직접 시행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과목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잘못 편성하여 '건설비'로 전용한 것으로, 교육청의 예산편성상의 오류를 전용이라는 행정 편의적인 방법으로 희석시킨 것으로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정책기획관)은 인천한누리학교 기숙사 비품 구입비로 당초 '유형자산' 목으로 편성된 9,100만원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여 다문화 대안학교 특성과 기숙사 시설에 맞게 구입하도록 한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정 예산 편성목에 편성하여 전용 등의 행정력 낭비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교육과학연구원)은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편성된 '무형자산' 5,500만원을 노후 전산장비의 장비 교체를 위해 '유형자산'으로 전용한 것임. 잦은 전산장애 발생으로 인해 네트워크

스위치 전체(3대) 교체를 위해 당초 예산에 편성된 1대분 외에 추가로 2대분 교체비를 전용하여 사용한 것으로, 전용을 통하기 보다는 추경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며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을 실제 소요량보다 과다 편성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원어민교사및보조강사운영(교육과정기획과)은 ‘학교회계전출금’ 5,100 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한 것으로, 단위학교에 지급하는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경비 지원비를 인천교육연수원 원어민 인건비로 전용한 것임. 교육연수원 원어민 보조교사를 예산편성 당시 기준등급보다 높은 우수 보조교사를 활용하여 발생한 인건비 부족분을 전용하여 충당한 것으로, 당초 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본질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는 점과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등급 상향조정으로 추가 인건비 소요가 당연히 예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 편성이 아닌 전용으로 충당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사례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서부·남부·동부·북부지원교육청)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조사 및 위해성 평가 석면조사 용역 실시 후 “석면관리종합대책(교육청교육시설과-5413(2013.10.21.)호)”의거 석면조사용역의 집행잔액을 석면교체 시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한 것임.

○ 예산 전용은 예산집행에 있어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예산집행과정에 발생하는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성을 부여하고 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함.

-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 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결을 통해 소요 경비를 확보·집행하여야 할 것임.

### 4-3) 예산 이체

- 예산 이체액은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25)에 근거한 것으로써, 2013회계연도에 두차례에 걸친 조직개편으로 총 81건 1조 4,182억 9,900만원의 이체가 발생함. 이는 전년대비 건수가 300%, 이체액은 3,892% 증가한 것임.

#### < 연도별 예산 이체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2011		2012		2013	
	예산이체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이체	전년대비 증감률	예산이체	전년대비 증감률
건 수	-	순감	27	순증	81	300.0
전용액	-	순감	36,439	순증	1,418,299	3,892.3

- 2013. 1. 1일자 대규모 조직개편으로 인해 72건 1조 3,953억 9,100만원의 예산이체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 2013. 4. 1일자 조직개편 등으로 인해 9건 229억 800만원이 추가 예산 이체되었음.

25)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

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이체(移替)할 수 있다.

## < 2013회계연도 예산 이체 발생현황 >

(단위 : 백만원)

소 관		이 체 액		비고
이체 받은 부서	이체 한 부서	증	감(△)	
<b>합 계</b>		<b>1,418,299</b>	<b>1,418,299</b>	
정책기획관	행정관리국 총무과	595	595	
	행정관리국 예산지원과	1,216,874	1,216,874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과	64	64	
공보담당관	정책기획관	524	524	
교육정책국 창의인성교육과	정책기획관	49	49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기획과	30,544	30,544	
교육정책국 교육과정기획과	교육정책국 창의인성교육과	6,552	6,552	
행정관리국 총무과	행정관리국 정보지원과	196	196	
행정관리국 예산지원과	정책기획관	21,133	21,133	
	행정관리국 학교설립기획과	427	427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과	정책기획관	75	75	
	행정관리국 예산지원과	71	71	
행정관리국 학교설립기획과	행정관리국 예산지원과	118,705	118,705	
행정관리국 복지재정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20	20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6,880	6,880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5,254	5,254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10	10	

소 관		이 체 액		비고
이체 받은 부서	이체 한 부서	증	감(△)	
행정관리국 정보지원과	교육정책국 정보직업교육과	3,224	3,224	
	행정관리국 총무과	1,110	1,110	
	행정관리국 행정관리과	254	254	
행정관리국 교육시설과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3,594	3,594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1,502	1,502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 복지재정과	3	3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 복지재정과	214	214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 복지재정과	422	422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 복지재정과	3	3	

\* 예결위 요구자료 87쪽 참조

## 5) 전년도 이월사업

### < 전년도 이월사업 집행실적 >

(단위 : 백만원, %)

구분	건수	이월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합계	36	67,329	50,476	-	16,852	75.0
명시이월	9	12,093	6,245	-	5,847	51.6
사고이월	27	55,236	44,231	-	11,005	80.1

○ 2012년도에서 2013년도로 이월된 사업 집행실적을 보면

- 명시이월의 경우엔 총 9건 120억 9,300만원이 이월되었으나 지출액은 62억 4,500만원으로 집행률이 51.6%에 불과했으며

- 사고이월은 총 27건 552억 3,600만원중 442억 3,100만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80.1%로 나타남.

### < 불용액 과다 발생 전년도 이월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과 목			이월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비고 (소관부서)
	세부사업	사업명	목					
명시 이월	학교 신설	학교신설토지 매입비(비즈니스고)	토지매 입비	5,500	-	5,500 (100%)	교육청과 도시공사 간 토지매입비 이견 으로 추후 재집행	복지재정과
	학교 증개축	학교토지매입 비(백석중)	토지매 입비	79	16	63 (79.8%)	백석중 사유지 수용 재결로 추후 집행	복지재정과
사고 이월	학교 증개축	학교신축(연평 초중고교통합 교사동 신축)	건설비	10,057	1,217	8,841 (87.9%)	민원발생으로 계획 변경	복지재정과
	학교 일반 시설	기타시설(인천 남중 외부환 경 개선공사)	건설비	204	78	126 (61.8%)	준공정산에 따른 집 행잔액	남부교육지 원청

\* 예결위 요구자료 21쪽 참조

- 불용액이 과다 발생된 전년도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 학교신설토지매입비(비즈니스고)의 경우 사업예산 전액인 55억원이 전액 불용되었으며 이는 교육청(학교설립기획과, 복지재정과)과 인천도시공사 간 토지매입비에 대한 이견으로 토지매입 가격 확정 후 예산을 재요구할 예정임. 그러나 현재까지 예산편성 요구가 없어 본 학교의 설립 및 학생수용계획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학교토지매입비(백석중)는 매입 대상사유지 수용재결로 2013년도 예산을 불용처리 후 2014년도 본예산에 6,872만원을 재편성하였으며

현재 소유자측 협의 성립 및 수용 재결에 의한 점유부지 매입완료로 4,261만원을 집행후 잔액은 2014년 제1회 추경예산에 감액 예정임.

-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전년도 사고이월사업 현황을 보면,
  - 학교신축(연평초중고교통합교사동 신축)의 경우, 대피시설 조성, 기존시설 철거, 임시 교사 설치 등에 대한 민원발생 문제로 신축계획이 변경되어 준공예정일이 2015년 10월로 연장된 것으로, 이월액 100억 5,700만원 중 87.9%인 88억 4,100만원이 불용되었음. 사고이월액은 다음연도로 재이월이 불가하여 불용처리후 2014년도 예산으로 재편성한 것으로, 현재 추진상황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본 검토보고서 6-1. 명시이월 참조)
  
- 기타시설(인천남중 외부환경 개선공사)은 2억 400만원 중 7,800만원이 집행되고 사업비의 61.8%인 1억 2,600만원이 준공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음. 동 사업은 인천남중 담장과 접한 주택 침하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추진된 사업이나 민원인주택과 접한 담장보수 등 민원인 보상 등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일부 공사진행이 불가하여 준공정산 처리된 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것임.

## 6) 다음연도 이월액

- 2013회계연도 이월사업비는 총예산현액 대비 1.9%인 514억 6,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0.3%인 84억 5,000만원, 사고이월은 1.1%인 313억 3,500만원, 계속비이월은 0.4%인 116억 8,200만원이 이월되었음.

## < 연도별 이월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비율	명시이월	비율	사고이월	비율	계속비 이월	비율
2010	2,583,615	215,618	8.3	45,594	1.8	170,024	6.6		
2011	2,712,056	38,335	1.4	2,819	0.1	35,516	1.3		
2012	2,613,884	67,327	2.6	12,092	0.5	55,235	2.1		
2013	2,728,613	51,467	1.9	8,450	0.3	31,335	1.1	11,682	0.4

- 2013회계연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23.6%가 감소하였으며 명시이월액은 △30.1%, 사고이월액은 △43.3% 감소하였음. 이는 계속비이월액의 발생으로 인해 명시이월 등 타 이월액이 상쇄된 부분이 있음.

### 6-1) 명시 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sup>26)</sup>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3건 84억 5,000만원이 발생하였음.

2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2013회계연도 명시이월 발생내역 >

(단위 : 백만원, %)

연번	과 목			예산 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소관부서)
	세부사업	사업명	목					
합계 3 건				16,679	5,694	8,450		
1	학교 신증설	학교신축 (연평초중고 교 통합교사 동 신축)	건설비	5,652	189	5,436	2012.9월에 착공하였으나 공사관련 민원으로 공사중지 후 신축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준공시기가 지연됨('15.10월 준공예정)	복지 재정과
			학교회계 전출금	700	0	700		
2		학교토지매 입비 (신월초)	토지매입 비	4,832	4,772	60	매입 대상 토지의 상속 미등기 등으로 지연됨('14.12월 매입예정)	
3	학교시설 증개축	다목적강당 (백석중 강 당)	건설비	5,494	733	2,253	토지매입('14.8월 예정) 후 추진('15.5월 준공예정)	서부 교육지원청, 사고이월 2,398(서운중)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385쪽 참조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신월초 학교토지매입비(복지재정과) 6,000만원과 백석중 다목적강당 증축사업(서부교육지원청) 22억 5,300만원은 두 건 모두 사유지 매입 지연으로 인해 이월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소유자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이월된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 연평초중고교 통합교사동 신축사업(복지재정과)은

- 북한의 연평도 포격이후 학생 및 교직원,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교육환경 제공과 심리적 안정감 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11

년 12월 설계용역 완료, 2012년 9월 착공하여 당초계획은 2014년 10월 준공예정이었으나 민원발생(대피시설 조성, 기존시설 철거, 임시 교사 설치 등의 문제)으로 인한 신축계획 변경으로 준공예정일이 2015년 10월로 연장되었음.

- 동 사업은 단순 학교시설을 넘어 지역적 특색에 맞춘 안전시설도 마련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협조가 필수 요소일 것이나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음. 향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반영을 통해 사업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여 더 이상의 이월되는 사례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 연도별 연평초중고교 통합교사동 신축사업 예산편성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구분	예산액 (A)	전년 이월액 (B)	예산현액 (A+B)	집행액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비고
2011	2회추경	609,528		609,528	116,236	84,340	408,953	사고 이월
	계	609,528		609,528	116,236	84,340	408,953	
2012	본예산	3,940,472	408,953	4,349,425	539,574	188,811	10,057,378	사고 이월
	1회추경	6,436,339		6,436,339				
	계	10,376,811	408,953	10,785,764	539,574	188,811	10,057,378	
2013	본예산	6,352,000	10,057,378	16,409,378	1,405,223	8,867,811	6,136,344	명시 이월
	계	6,352,000	10,057,378	16,409,378	1,405,223	8,867,811	6,136,344	
2014	본예산	10,098,554	6,136,344	16,234,898				
	계	10,098,554	6,136,344	16,234,898				

- 또한, 연평초중고교 통합교사동 신축사업의 연도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명시·사고이월 처리 및 불용 후 다음해에 사업비로 재편성하는 등 복잡한 사업비 운용과 전체 예산규모 파악 곤란 등 예산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는 바,
  - 향후에는 동사업과 같이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 경비의 경우 일괄하여 의회 의결을 얻어 운용하고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계속비 이월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6-2) 사고 이월

-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27)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은 총 17건 313억 3,500만원으로 전년대비(27건, 771억 8,300만원) △59.4% 감소하였음.

27)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발생원인별 사고원인을 보면, 계약(준공)기간 미도래 8건 77억9,800만원 24.9%, 추경예산편성사업 2건 35억7,400만원 11.4%, 공사(납품)지연 2건 1억2,400만원 0.4%, 동절기공사 5건 198억3,800만원 63.3%로 나타남.

### < 발생원인별 사고이월 내역 >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총계	계약(준공)기간 미도래	추경예산편성사업	공사(납품)지연	동절기공사
건 수	17	8	2	2	5
이월액	31,335	7,798	3,574	124	19,838
비 율	100	24.9	11.4	0.4	63.3

-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 시설공사 추진에 따른 준공기간 미도래 및 동절기 공사로 인한 것으로, 학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부분의 시설공사가 수업 때문에 방학기간으로 미뤄지고 동절기에는 물 공사 중지로 일부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음.
  - 또한 추경예산 편성사업으로 인한 이월사업 2건도 시설공사 사업으로 예산확보 후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해 이월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러한 사유로 인해 사고이월이 다수 발생될 수 있으므로 향후 장기 공사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엔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고 정확·신속한 행정처리를 통해 설계변경이나 공사발주가 지연되는 등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공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임.

## < 2013회계연도 사고이월 발생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번	과 목			예산현액	이월액	이월사유	비고 (소관부서)
	세부사업	사업명	목				
<b>합계 17 건</b>				<b>84,836</b>	<b>31,335</b>		
1	교과교실제 운영지원	교과교실제운영지원 (교과교실제시설공사)	건설비	6,499	1,759	교과교실제 시설공사 준공 기일 미도래('14.9월 준공예정)	교육과정기획과
2	학교운영비 지원	기타운영비지원 (진산과학고본관리모델링, 천문대공사)	건설비	412	352	진산과학고천문대및학교시설공사 준공기일미도래 ('14.3.9.준공)	
3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급식시설개선및확충(재능고·강남영상미디어도급식실현대화)	건설비 학교회계 전출금	2,336 5,643	59 1,373	준공기일미도래및동절기공사중지 에따른공사지연 ('14.6월준공)	평생교육체육과
4	교원연수지원	교원연수지원 (교원양성및무시험검정연구용역)	운영비	227	48	교육부 교원양성 연구용역 기간 미도래('14.5월 완료)	교원정책과
5	공유재산및 물품관리	도시계획시설결정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용역)	연구개발비	132	106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변경결정결 과미통보 ('14.하반기통보예정)	학교설립기획과
6	학교신증설	학교이전재배치(만월초)	건설비	23,368	12,940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14.5월 준공)	교육시설과
7		학교신축(구월단설유치원)	건설비	14,642	3,554	동절기 공사중지 및 절대공기 부족('14.7월 준공)	
8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증축 (공항중, 영흥고, 인화여중)	건설비	7,578	1,270	-공항중:시공업체공사지연에따른 준공금미지급('14.3.17.준공) -영흥고:공사타절에따른공기연장 ('14.4.7.준공) -인화여중:동절기공사중지에따른 공기연장('14.4.25.준공)	교육시설과
9	학교시설증개축	다목적강당(부곡초)	건설비	5,609	1,059	준공기일미도래 ('14.4.25.준공)	북부교육지원청
10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사업 (조동초그린스쿨조성 및환경개선공사)	건설비	4,496	3,366	-1회추경(2013.5.6)예산 -준공기일미도래 (2014.9월준공예정)	동부교육지원청
11		기타시설(연화중화장실개선)	건설비	1,216	208	-2회추경(2013.12.16)예산 -준공기일미도래(2014.3.30.준공)	
12	학교시설증개축	다목적강당(서운중)	건설비	5,494	2,398	준공기일미도래 ('14.9월 준공예정)	서부교육지원청,
13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사업(신석초, 효성서초)	건설비	4,109	2,039	준공기일미도래 -신석초:'14.6월준공 -효성서초:'14.5월준공	서부교육지원청,
14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기타시설(양사초외6교사택개축및보수)	건설비	2,865	642	동절기공사중지로인한 준공기일미도래('14.4월준공)	강화교육지원청
15	직속기관운영	기관공통경비(인천학생과학관 운반용 차량구입)	유형자산	27	18	소량생산모델로제작기간확보에따른납품기일미도래('14.5월납품)	교육과학연구원
16	직속기관운영	기관공통경비(예약관리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비	43	18	구축한예약관리프로그램의오류발생으로납품지연('14.5월납품)	교직원수련원
17	도서관운영지원	이동도서관운영(버스구입)	운영비	61	45	차량납품일미도래 ('14.4월납품)	부평도서관
			유형자산	80	80		

\* 예결위 요구자료 127쪽 참조

- 이월사업은 보다 엄격한 제약과 통제기능이 필요하며, 이월액을 줄일 방법으로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사업집행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6-3) 계속비 이월

- 계속비는 「지방자치법」 제128조<sup>28)</sup> 및 「지방재정법」 제42조<sup>29)</sup> 및 제50조 제3항<sup>30)</sup>에 의거, 수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으로서, 계속비는 사업의 완성으로서 불용액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연간부담액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완성 연도까지 계속하여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8) 「지방자치법」 제128조(계속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9) 「지방재정법」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가능한 한 계속비로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30)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 계속비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	사업명	사업규모	사업기간	총사업비	연부액	지출액	이월액	사업 추진현황·계획
교육 시설과	학교 신증설	만월중 이전재배치	31학급, 12,342㎡	2013~ 2015	18,584	4,532	589	3,943	2014.12.14.준공예정 (공정률 31%진행)
교육 시설과	학교 신증설	도담초 신축	30학급(일2 4,특1,유5), 12,153㎡	2013~ 2015	17,616	4,067	567	3,500	2014.12.20.준공예정 (공정률 31%진행)
		청람중 신축	25학급(일 24,유1), 11,222㎡	2013~ 2015	16,088	3,873	530	3,343	2014.12.20.준공예정 (공정률 42%진행)
강화 교육 지원청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덕신고 증개축공사	2796㎡	2013~ 2014	3,846	1,000	103	897	-2014.8월 현재 공 정률46% : 3층 골조 공사 진행 중 -2014.12월 공사 완 료 예정
합 계					56,134	13,472	1,789	11,683	

\* 예결위 요구자료 133쪽 참조

- 계속비 사업 중 이월액이 발생된 사업은 총 3개 사업으로, 총 116억 8,300만원의 계속비 이월이 발생되었음.
- 세부사업별 내역을 보면
  - 만월중 이전재배치는 학교수용계획 및 학교이전재배치계획에 의거 서창2택지개발에 따른 증가 학생 수용 및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교예정일이 2015.3.1일로 총사업비 185억 8,400만원이 투입되며 현재 31%의 공정률로 2014.12.14일 준공예정임.
  - 도담초와 청람중 신축은 학교수용계획에 의거 청라지구 개발로 인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교유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로, 개교예정일이 2015.3.1일로 총사업비 337억 400만원이 투입되며 도담초는 현재 31%의 공정률, 청람중은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14.12.20일 준공예정임.

- 덕신고 증개축공사는 노후된 교사동을 증·개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8억 4,600만원이며 현재 공정률 46%로 2014.12월 준공예정임.

## 기 지방교육채 및 민간투자사업(BTL)<sup>31)</sup>

### < 채무결산 종류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종류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기한도래 미지급채무
		계	채무발생액	상환,소멸액		
합 계	526,702	35,411	55,045	19,634	562,113	0
차입금	130,400	12,789	15,189	2,400	143,189	0
BTL	396,302	22,622	39,856	17,234	418,923	0

\*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415쪽 참조

- 2013회계연도말 채무 현재액은 5,621억 1,300만원 전년도말 현재액 5267억 200만원 보다 354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음. 이는 기존 지방교육채와 민간투자사업(BTL) 원금에 대한 196억 3,400만원의 일부상환이 이루어졌으나 2013년도에 학교신설비 재원조달을 위한 151억 8,900만원이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추가되어 현재액이 증가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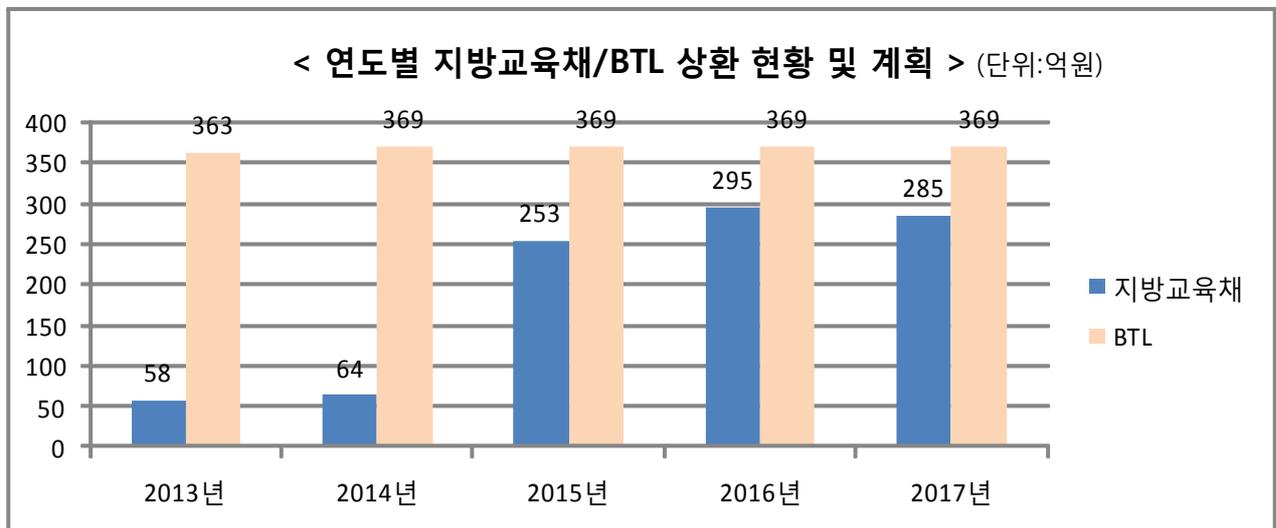
<sup>31)</sup>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서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 2013회계연도 채무부담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말현황 채무부담잔액	연도별 상환계획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교부금 부담	원금	445,158	14,662	25,446	31,205	31,933	341,912	445,158
	이자	166,634	19,974	19,179	17,946	16,535	93,000	166,634
	계	611,791	34,635	44,625	49,151	48,468	434,912	611,791
자체 부담	원금	116,955	4,198	13,333	13,508	13,691	72,225	116,955
	이자	33,984	4,522	4,206	3,710	3,205	18,341	33,984
	계	150,939	8,720	17,539	17,218	16,896	90,566	150,939
합계	원금	562,113	18,859	38,779	44,713	45,624	414,137	562,113
	이자	200,618	24,496	23,385	21,656	19,739	111,342	200,618
	계	762,730	43,355	62,164	66,368	65,364	525,478	762,730

- 이자까지 포함된 2013회계연도 채무부담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3년말 현재 채무부담(지방교육채+BTL) 잔액이 원금 5,621억 1,300만원과 이자 2,006억 1,800만원이 포함된 총 7,627억 3,000만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채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남.



## 7-1) 지방교육채

### < 지방교육채 발행 및 미상환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상환자원	상환조건	승인액	발행액	미상환액	발행사유
2009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교부금	4.85%(고정) 5년거치 10년상환	101,200	101,200	101,200	세수금 결손에 따른 교부금 보전
2012	인천체고제2훈련동 증축 등 3건	자체	3.60%(변동) 2년거치 3년상환	44,909	33,900	26,800	세수금 결손에 따 른 차입
2013	학교신설비	교부금	3.60%(변동) 2년거치 3년상환	15,264	15,189	15,189	세수금 결손에 따 른 교부금 보전
합 계				161,373	150,289	143,189	

\* 예결위 요구자료 145쪽 참조

- 2013회계연도 기준 지방교육채 미상환액이 1,431억 8,900만원으로 세 부적으로 살펴보면
  - 2009년과 2013년에 학교 관련 시설비 자원 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채 가 발행된 바 있으며 미상환액이 1,163억 8,900만원이 남아있으나, 중앙정부에서 원금과 이자를 부담하는 건으로 교육청 재정에 직접 적인 영향은 낮을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교부되고 있는 상황 에 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지방교육채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임을 감 안할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교육재정의 부담요인이 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어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2009년 발행된 지방교육채의 이자액의 경우 4.85%의 높은 고 정금리를 적용받고 있어 차환채 발행 등의 이자액 감소 방안을 강 구해야 할 것임.

- 2012년에는 인천체고 제2훈련동 증축 등 3건에 대한 재원조달을 위해 교육청 자체 지방교육채를 339억원을 발행한 바 있으며 미상환액이 268억원이 남아있어 향후 몇 년간 교육청의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 < 2013회계연도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말현황 채무부담잔액	연도별 상환계획					합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지방 교육채	교부금 부담	원금	116,389	0	10,120	15,183	15,183	75,903	116,389
		이자	32,647	5,455	5,331	4,799	4,121	12,940	32,647
		계	149,036	5,455	15,451	19,982	19,304	88,843	149,036
	자체 부담	원금	26,800	0	8,933	8,933	8,933	0	26,800
		이자	2,651	965	884	562	241	0	2,651
		계	29,451	965	9,817	9,495	9,174	0	29,451
	소계	원금	143,189	0	19,053	24,116	24,116	75,903	143,189
		이자	35,298	6,420	6,215	5,361	4,362	12,940	35,298
		계	178,487	6,420	25,268	29,478	28,478	88,843	178,487

\* 예결위 요구자료 140쪽 참조

- 이자까지 포함한 2013회계연도 지방교육채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3년말 현재 채무부담잔액이 원금 1,431억 8,900만원과 이자 352억 9,800만원이 포함된 총 1,784억 8,700만원으로 이자가 원금 대비 24.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원금 상환이 시작되어 2014년 대비 상환액이 4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적극적인 재원마련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차입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7-2) 민간투자사업(BTL)<sup>32)</sup>

### < 2013회계연도 BTL사업 예산집행 총괄현황 >

(단위 : 개교, 백만원)

학교수	임대료(A)			운영비(B)	집행액 (C=A+B)	비 고
	원금	이자	계			
72	17,234	19,074	36,308	9,761	46,069	

- 2013회계연도 BTL사업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BTL 학교수는 총 72 개교로 임대료 363억 800만원과 운영비 97억 6,100만원을 포함해 총 460억 6,900만원이 집행되었음.

### < 2013회계연도 BTL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 >

(단위 : 백만원)

구 분		'13년말현황 채무부담잔액	연도별 상환계획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이후	합계	
민간 투자 사업 (BTL)	교부금 부담	원금	328,768	14,662	15,326	16,022	16,750	266,009	328,768
		이자	133,987	14,519	13,848	13,147	12,413	80,060	133,987
		계	462,755	29,180	29,174	29,168	29,163	346,069	462,755
	자체 부담	원금	90,155	4,198	4,400	4,575	4,758	72,225	90,155
		이자	31,333	3,557	3,323	3,147	2,964	18,341	31,333
		계	121,488	7,755	7,722	7,722	7,722	90,566	121,488
	소계	원금	418,923	18,859	19,726	20,596	21,508	338,234	418,923
		이자	165,319	18,076	17,170	16,294	15,377	98,401	165,319
		계	584,243	36,935	36,896	36,891	36,885	436,635	584,243

\* 예결위 요구자료 140쪽,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서 401쪽 참조

<sup>32)</sup> BTL(Build-Transfer-Lease)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나와 있는 민간투자사업 방식의 하나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준공(Build)과 동시에 당해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 관리운영권(사용권)을 인정하되, 그 시설 관리운영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차(Lease)하여 사용·수익하는 방식

- 이자까지 포함한 2013회계연도 BTL 현황 및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2013년말 현재 채무부담잔액이 원금 4,189억 2,300만원과 이자 1,653억 1,900만원이 포함된 총 5,842억 4,300만원으로 이자가 원금 대비 39.5%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BTL 학교 임대기간이 20년 장기이고 그에 따른 이자가 지속 발생된 데 따른 것임.
- 학교 BTL사업은 공공기관에서 시급하게 공급이 필요한 학교 등의 생활기반시설에 대해 재정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며
  - 지방교육채와 마찬가지로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원리금을 보전해 주고 있고 BTL상환액은 20년동안 상환하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기 어렵지만 이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신설교 개교시 신중한 검토와 정확한 재정운영 추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2011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청의 기본운영비 학교회계 배정 시 BTL 민간사업자 담당 운영비 항목과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임대료의 경우에도 사업자의 청구내역에 의존하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임대료 지급내역 등 누적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8) 기타 검토의견

### 8-1)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지원

- 누리과정은 유아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만 3~5세를 위한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과정으로, 2012년 도입한 5세아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 3~4세 유아에게도 동시에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2012년 20만원에서 2016년까지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임. 만3~4세 보육료·유아학비는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2014년까지는 국고, 지방비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하여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여 시·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할 계획임.

< 만 3~5세 대상 보육료 지원사업의 변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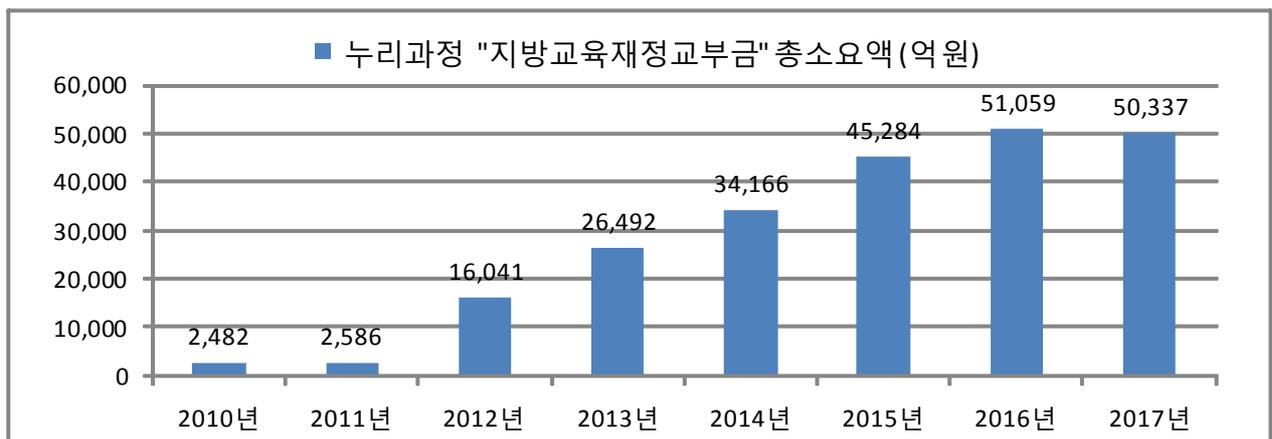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지원대상	·만3~5세 : 소득하위 70%	·만5세 : 전 계층으로 확대 ·만3~4세 : 소득하위 70%	·만3~5세 : 전 계층으로 확대 (100%)
교육·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으로 이원화	·만5세 : 5세 누리과정 ·만3~4세 : 3~4세 교육과정	·만3~5세 : 3~5세 연령별 누리과정
지원단가	·국공립유치원(월5.9만원)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4~5세 월 17.7만원, 만3세 월 19.7만원)	·국공립유치원(현행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5세 월 20만원, 만4세 월 17.7만원, 만3세 월 19.7만원)	·국공립유치원(현행 유지) ·사립유치원 및 어린이집 (만3~5세 월 22만원) ※ 연차적 인상 : '16년까지 월30만원
재원부담	·유아학비/보육료로 이원화 (단, 지원범위 및 단가는 동일)	·교육청 재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 '12년 : 만5세, '13~14년 : 만3~4세 일부, '15년이후 : 만3~5세 전부 부담	
관리체제	·유치원(교과부) ·어린이집(복지부)	·이원화 체제 유지	

-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국가 전체의 소요액 추계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하는 재원은 2012년 1조 6,041억원에서 2016년 5조 1,059억원으로 급증할 예정임. 이는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추정하는 2016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7조 7천억원의 10.7%에 달하는 규모임. 국회예산정책처의 현안분석에서 조차도 경기변동에 영향을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급격히 증가할 보육·교육 재정을 안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낼 정도임.

< 누리과정에 대한 연도별 전국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액 추계 >

(단위 : 억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연평균 증가율
누리과정 지원 (A)	16,041억	26,492억	34,166억	45,284억	51,059억	50,337억	25.7%
지방교육재정 교부금(B)	38.4조	41.1조	40.6조	40.6조	46.6조	49.9조	5.4%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중 누리과정지원액 비중 (A/B)	4.2%	6.4%	8.4%	11.2%	11.0%	10.1%	



\* 자료 : • 2010~2011년 - 교육과학기술부 「만5세 공통과정도입 추진계획(보도자료,2011.5.2)」, 「만3~4세 누리과정도입계획(보도자료,2012.1.18)」  
 • 2012~2017년 - 국회예산정책처 「2013회계연도 결산 분야별 분석」(2014.7)

- 인천시 교육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012년도에 만5세 누리과정이 도입됨에 따라 ‘누리과정지원’ 사업액(1,023억 5,600만원)이 2011년도(유아교육비지원 509억 400만원)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였음.
- 나아가 2013년도부터는 누리과정 사업대상이 만3~4세까지 전면 시행됨에 따라 2013년도에는 사업액이 전년대비 37.9%,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35.1%까지 증가함. 2015년부터는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토록 할 계획이어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인천시 교육청 누리과정 지원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누리과정지원(A)	102,356	141,134	190,618	36.5%
지방교육재정교부금(B)	1,869,100	2,036,815	2,092,247	5.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누리과정지원액 비중 (A/B)	5.5%	6.9%	9.1%	

\* 기준 : 2012~2013 결산액, 2014 본예산액

\* 누리과정지원 : 2012부터 누리과정이 시행되어 2011년에는 유아교육비지원(50,904백만원) 항목으로 지원,  
2012년 - 누리과정지원 53,485백만원 + 유아교육비지원 48,871백만원 합산,  
2013년부터 누리과정지원에 유아교육비지원이 편입되어 편성됨.

**8-2)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및 법정부담금**

- 2013회계연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 결산액은 1,394억 6,800만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간 추이를 보면 연평균 7.2%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이는 교원수 증가, 인건비 및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사료되나

<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학교급별	학교수	세출결산액		
			인건비	운영비	계
2011	중	11	18,438	2,788	21,226
	고	30	89,050	664	89,714
	특수	4	8,321	2,032	10,353
	계	45	115,809	5,484	121,293
2012	중	11	18,928	3,330	22,258
	고	30	97,791	1,175	98,966
	특수	4	8,933	2,868	11,801
	계	45	125,652	7,373	133,025
2013	중	11	18,438	3,417	21,855
	고	30	103,918	1,148	105,066
	특수	4	9,484	3,063	12,547
	계	45	131,840	7,628	139,468

\* 예결위 요구자료 197쪽 참조

-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은 사립 중·고·특수학교에 대하여 공립 수준의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고 자체수입 등 기준재정수입액 대비 부족액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 기준재정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법인전입금, 기타수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법정전입금(학교법인에서 당해학교로 진출하는 법정부담금 및 전입금 사업비)의 재원이 되는 사립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sup>33)</sup>이 2011년도 3.3%에서 2013년도 2.0%로 감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 2항에 따른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연간 수익률 기준치인 3.5%에 밑도는 수치를 보이고 있음.

### < 사립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평균수익률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법인수	수익용기본재산 총액 (A)	수익액 (B)	수익률 (B/A)
2011	26	60,814	2,018	3.3
2012	26	58,402	1,644	2.8
2013	26	58,695	1,178	2.0

\* 예결위 요구자료 197쪽 참조

- 이러한 수익률 감소는 사립법인들이 마땅히 부담해야 할 당해 사립 학교 교직원의 연금이나 보험료 등의 법정부담금 조차 충당하지 못해 2011년에는 부담률이 26.7%였던 것에 비해 2013년에는 22.1%까지 감소하여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sup>34)</sup> 이는 곧 학교법인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교육비 특별회계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33)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13조(수익용기본재산) ① 사립의 각급학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이하 "특수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10.31., 2005.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용기본재산은 그 총액의 100분의 3.5 이상에 해당하는 가액의 연간수익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5.>

3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 < 사립법인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재정결함지원대상 학교수	법정부담금 소요액 (A)	실제부담금 (B)	부담률 (B/A)
2011	45	7,690	2,055	26.7
2012	45	8,047	2,068	25.7
2013	45	8,373	1,850	22.1

\* 예결위 요구자료 197쪽 참조

- 또한 이로 인해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예산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 감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사학기관의 수익구조 개선과 재산수익 증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있는 제재수단과 유인책이 강구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9) 예비비 지출

-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sup>35)</sup> 및 「지방재정법」 제43조<sup>36)</sup>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고, 예비비를 지출할 경우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음.

<sup>35)</sup> 「지방자치법」 제129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sup>36)</sup>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회계연도별 예비비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건 수	1	1	2
예 산 액 (A)	89,769	10,398	1,145
지 출 결 정 액 (B)	980	202	1,140
지 출 액 (C)	953	202	873
다음연도이월액 (D)			
집 행 잔 액 (B-C-D)	27		267
지 출 결 정 률 (B/A)	1.1	1.9	99.6

○ 최근 3년간의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 2011년도에 897억 6,900만원을 예산 편성하여 9억 8,000만원을 지출 결정, 예산대비 1.1%의 지출결정률을 보였으나 2013년도에는 11억 4,500만원을 예산편성하여 11억 4,000만원을 지출결정, 예산대비 99.6%의 높은 지출결정률을 보임.
- 또한, 2011년 예비비 예산액은 897억 6,900만원, 2012년 103억 9,800만원, 2013년도에는 11억 4,500만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음.

○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과 설정에 관한 훈령」을 보면,

-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0.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 2013회계연도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0.1%인 26억 1,419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11억 45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음.
- 이는 세출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가용재원 부족과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확정시점(13.12.16)상 다음연도의 곧 도래가 예상되어 의무비율보다 적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상황에 대한 교육예산의 대응성을 떨어뜨리고 안정적인 교육예산의 운용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엔 반드시 예비비 의무비율 편성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 백만원)

소관부서	지출사유	예산액	지출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용승인일
<b>합 계 2 건</b>		<b>1,145</b>	<b>1,140</b>	<b>873</b>	<b>267</b>	
행정관리과	전교조인천지부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부대경비 지원		360	359	1	'13.05.28
교육시설과	학교 전기요금 효율화 추진(최대수요전력관리장치 설치)		780	515	265	'13.10.17

\* 예결위 요구자료 121쪽

- 201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액은 11억 4,500만원으로 2건 11억 4,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8억 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6,7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각 사안별로 살펴보면,

- 전교조인천지부 사무실 임차료 및 부대경비 지원의 경우, 사무실 임차 종료일(13.6.29) 도래 예정으로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기간 연장 가능 여부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으나 임대인의 변심으로 연장계약 불가함을 통보(13.5.8) 해 옴에 따라 반환된 임차보증금은 세입처리 후 사무실 이전에 따른 임차보증금과 부대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한 사례임.
-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 설치는 최근 원전 가동 중단과 평년보다 높은 무더위로 인한 사상 최대전력 수급 위기상황에 대비하고자 단기적 효과가 있는 최대수요전력 관리장치의 조기 설치를 통해 학교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절약 추진을 위해 예비비를 사용한 것임. 동 장치는 하계뿐만 아니라 동계에도 활용하여 전기요금 절약 등 조속히 설치할수록 유리하다 할 수 있겠으나
-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동 사안의 예비비 승인이 타당했는지, 연말 예비비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어 사용한 것은 아닌지, 보다 긴급한 사안 등의 발생에 대비해 자금을 유보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등 예비비 사용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1. 주요 질의 및 심사내용

- 성인지 결산시 성과평가 등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성 평등이라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적극적으로 운영 및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세월호 사건 이후 안보 의식이 강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CCTV의 60%가 100만 화소에도 못 미쳐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음. 교육청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높은 화소의 CCTV로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 법정이전수입에 대한 교육청과 시청의 예산 불일치 문제와 과년도분 미전출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교육청에서는 시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통해 법정전입금이 원활하게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 일선 학교에서 전기요금 부족으로 에어컨을 미가동하여 학생들이 찻통교실에서 공부를 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정부에서 학교 전기로 절감 및 전기요금부담완화금 등 목적성 경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경비가 학교에서 목적외로 사용되거나 상기 문제점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인천시청의 보통교부세에 대한 불이익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교육청은 보통교부금에 대한 산정방식 등이 타시도와 비교시 불이익은 없는 지 철저히 검토하여 개선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바람.

-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집행잔액은 불용처리하고 예산편성을 통해 소요 경비를 확보·집행하기 바람.
- 2005년 5월부터 무석면텍스가 생산되어 학교시설 등 석면을 전면 교체하도록 되어있고 예산이 5~6백억원 소요를 예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해 주기 바람.
- 특수교육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파악을 통해 학급 및 교원 수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주기 바람.
- 학교당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학교가 있는 바, 충실히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람.
- 원어민교사 중 중국어교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수요조사 등을 통해 수급에 차질없도록 해주기 바람. 영어교사와의 봉급 등 차이가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BTL사업의 금리 적용기준이 5년단위로 갱신되어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바, BTL 업체와의 적극적인 재협약 추진을 통해 개선해 나갈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

## 2. 토론요지

- 찬성 : 황인성, 조계자, 김정현, 김진규, 박종우, 유제홍, 이영훈,  
임정빈 위원
- 반대 : 없음.

### 3. 심사결과 : 원안승인 [ 재석위원 전원 찬성 : 8명 ]

○ 다음과 같이 시정을 촉구하면서 원안승인 가결하였음.

- 최근4년간 세입결산액은 연평균 2.7%, 세출결산액은 연평균 4.2%의 증가율을 나타내 세입에 비해 세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는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등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와 그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 증가 등으로 예·결산 규모가 증대되었으나, 이에 반해 부동산시장 위축 등 실물경기 악화와 이에 따른 지방세 징수 부진, 인천시의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이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교육청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기 바람.
- 시로부터의 법정이전수입 세입결손액이 2011년도에는 △647억, 2012년에는 △71억, 2013년에는 △259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고 있고 시와 교육청의 예산 불일치 현상도 매년 발생되고 있음. 또한, 2001년도부터 미전출된 법정이전수입 과년도분이 681억원에 육박하고 있어 이는 교육의 질적 저하와 교육행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바 시와 교육청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기 바람.
- 교육재정의 수입구조는 매년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반면에 자체수입의 주요자원인 교수-학습활동 수입은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해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수입이 감소하여 연평균 2.3%로 감소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또한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바, 인천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의 확보 및 자체수입 확충방안을 적극적으로 마

련해 나가기 바람.

- 2013년도 불납결손액은 총 1억 7,595만원으로 과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하였으나 입학금 및 수업료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학생수와 그에 따른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1%가량 늘어나 이를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미수납액 현황 또한 전년대비 14% 증가하였으므로 가장 큰 미수납 사유인 채무자 재력부족은 수납 곤란을 이유로 방치할 경우 미수납액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사례별로 현실적인 징수방안을 검토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 201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따른 불용액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그중 가장 큰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소요예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였다는 반증일 수 있음. 따라서 계획수립 시 실행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사업 소요예산에 대해 반드시 실제 집행가능한 부분만을 반영하여 예산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임.
- 2013회계연도 예산 전용액은 52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4.8%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예산 전용의 63.6%가 4/4분기에 발생되어, 연도말 사업별 예산 과부족 문제를 예산전용으로 상쇄시킨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에는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용도와 금액의 범위내에서 세출예산이 집행되도록 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편성·의결을 통해 소요경비를 확보·집행하여야 할 것임.
- 이자까지 포함된 2013년말 현재 지방교육채와 BTL의 채무부담 잔

액이 원금 5,621억 1,300만원과 이자 2,006억 1,800만원이 포함된 총 7,627억 3,000만원으로 이자가 원금의 3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부터 본격적인 지방채에 대한 원금 상환으로 전년대비 4배 이상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재정의 부담으로 작용될 소지가 크다 할 것임. 따라서 향후 자체재원을 통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고금리 지방채에 대한 차환채 발행 등 이자액 감소 방안 마련은 물론, 향후 적극적인 재원마련 및 예산절감 등을 통해 차입행위 발생을 억제하는 등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2013회계연도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 결산액은 1,394억 6,800만원으로 2011년부터 2013년간 추이를 보면 연평균 7.2%의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사립학교법인의 수익률 감소와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임. 이는 곧 학교법인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질 수 있고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예산 및 교육환경개선 예산 감소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사학기관의 수익구조 개선과 재산수익 증대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과 유인책 강구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결산검사의견서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향후 재발 방지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함.

#### 4. 소수의견 및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